검 토 보 고 서

연번	의안번호	발의자 (제출자)	의 안 명	쪽
1	476	검단구청장	아이돌봄센터 민간위탁동의안	2
2	481	이현주 의원	인천광역시 검단구 지역돌봄 통합지원에 관한 조례안	7
3	482	이현주 의원	인천광역시 검단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5
4	483	홍순서 의원	인천광역시 검단구 대한적십자사 봉사회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	18
5	477	검단구청장	검단구 다함께돌봄센터 10호점, 11호점 민간위탁 동의안	25
6	478	검단구청장	검단구 육아종합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35
7	484	검단구청장	검단·당하노인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	48
8	479	검단구청장	구립서로이음장애인주간보호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58
9	485	(나선희,김남원 박병빈,이현주 이향미,한규창) 의원	인천광역시 검단구 장애인 표준사업장 생산품 우선구매 촉진 조례안	64
10	480	검단구청장	인천광역시 검단구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3

2026. 9. .

복지안전도시위원회

의회사무과장 정홍선

“아이돌봄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검 토 보 고 서

【 검단구청장 】
의안번호 476

Ⅰ. 제안 경위

○ 의 안 명: 아이돌봄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 제 안 자: 검단구청장

○ 제출일자: 2026년 9월 3일

○ 회부일자: 2026년 9월 3일

Ⅱ. 제안 이유

○ 「아이돌봄 지원법」에 따른 아이돌봄서비스를 효율적으로 제공하고, 아동의 복지증진과 보호자의 일·가정 양립을 지원하기 위하여 신규 설치되는 검단구 아이돌봄센터의 운영을 전문성을 갖춘 민간기관에 위탁하고자 하는 사항임.

○ 특히 행정체제 개편에 따라 기존 서해구 아이돌봄센터 공동 활용체계를 종료하고 2027년부터 검단구 관할의 아이돌봄서비스 제공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민간위탁을 추진하려는 것임.

Ⅲ. 주요 내용

○ 위탁사무

- 아이돌보미 모집·채용 및 관리
- 아이돌봄서비스 연계계획 수립 및 서비스 연계
- 아이돌봄서비스 이용자 관리
- 아이돌봄서비스 제공 과정의 안전관리
- 아동학대 예방 및 사후관리

- 그밖에 「아이돌봄 지원법」에 따른 아이돌봄서비스 제공기관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

○ 수탁기관 선정

- 공개모집
- 서비스 제공 경력 및 능력, 서비스 제공 범위, 아이돌보미 확보 및 양성 능력, 서비스 질 관리 및 민원관리 체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선정

○ 소요예산

- 2027년부터 2029년까지 총 17,307,804천원 규모
  - 국비: 11,791,783천원
  - 시비: 2,858,156천원
  - 구비: 2,657,865천원

Ⅳ. 검토 의견

1. 법적 근거

○「아이돌봄 지원법」 제11조

- 현행 「아이돌봄 지원법」 제11조제1항은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이 아이돌봄서비스를 효율적으로 제공하기 위하여 아이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을 지정·운영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음. 또한 같은 조 제2항에서는 지역적 분포, 적정 공급 규모 및 대상 아동 수 등을 고려하여 적정 수의 기관을 지정하도록 하고 있음.
- 따라서 검단구가 아이돌봄서비스 제공기관을 설치·운영하는 것은 법률상 근거가 있으며, 신규 행정구역 출범에 따라 검단구 관할의 아이돌봄서비스 제공기관을 마련할 필요성도 인정됨
- 다만, 중요한 점은 「아이돌봄 지원법」에서 ‘민간위탁’이라는 방식을 직접 규정하고 있는 것은 아니라는 점으로, 법률은 구청장이 아이돌봄서비스 제공기관을 ‘지정·운영’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실제 민간기관을 수탁자로 선정한 후에는 해당 기관이 「아이돌봄 지원법」 및 시행규칙에서 정한 지정 기준을 충족하여 별도의 지정 절차를 거쳐야 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함

○ 「아이돌봄 지원법 시행규칙」 제7조 및 별표 3

- 현행 시행규칙 제7조제1항은 아이돌봄서비스 제공기관의 지정기준을 별표 3에서 정하도록 하고 있음.
- 또한 지정받으려는 자는 사업계획서와 지정기준 충족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하며, 구청장은 지정기준에 적합한 경우 지정서를 발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특히 별표 3에서는 서비스 제공기관에 대하여 시설·인력·운영 등에 관한 기준을 두고 있으며, 사무실 및 상담공간 등의 시설기준과 전담인력·지원인력·아이돌봄사 등에 관한 인력기준을 요구하고 있음.
- 따라서 이번 민간위탁 수탁기관 선정 시에는 단순히 민간위탁 조례상 선정기준만 적용할 것이 아니라, 「아이돌봄 지원법 시행규칙」 별표 3의 지정기준 충족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여야 할 것임.

○ 「아이돌봄 지원법」 제26조

- 같은 법 제26조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법에 따른 업무 수행에 필요한 비용 및 지정 아이돌봄서비스제공기관의 운영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 따라서 국비·시비·구비를 재원으로 아이돌봄서비스 제공기관의 운영 및 관련 사업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는 것은 법적 근거가 있다고 판단됨. 다만, 동 조항은 지방자치단체의 비용 부담을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

○ 「아이돌봄 지원법」 제28조 등에 따른 구청장의 지도·감독

- 「아이돌봄 지원법」 제28조는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이 원활한 아이돌봄서비스 수행을 위하여 아이돌봄서비스 제공기관 등에 필요한 지도와 명령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 따라서 민간위탁을 실시하더라도 아이돌봄서비스의 공공성과 안전성에 대한 최종적인 관리·감독 책임이 구청장에게 있음을 전제로 위·수탁 협약 및 관리체계를 마련할 필요가 있음.
- 특히 지정 아이돌봄서비스제공기관에 대하여 아이돌봄서비스 제공 중에 발생하는 안전사고에 대비한 손해배상 책임보험 가입 의무 및 안전조치 의무를 새롭게 규정하고 있어 수탁기관 선정 및 협약 체결 시 책임보험 가입 여부와 안전관리계획을 명확하게 확인할 필요가 있음.

2. 민간위탁의 적정성 검토

○ 「인천광역시 검단구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4조에서

는 구청장이 특수한 전문지식·기술이 필요한 사무, 능률성이 현저히 요구되는 사무 등을 민간위탁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민간위탁의 적정성을 검토할 때 공공성·안정성, 경제적 효율성, 민간의 전문지식 활용 가능성, 성과 측정의 용이성 및 관리·운영의 투명성 등을 고려하도록 하고 있음.

○ 아이돌봄서비스는 아동의 안전과 직접적으로 관련되는 공공서비스이므로 민간위탁을 추진하더라도 공공성 및 안전성 확보를 최우선으로 고려하여야 함.

○ 「지방자치법」 제117조제3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주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않는 조사·검사·검정·관리업무 등을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 아이돌봄서비스 제공기관의 운영은 아이돌보미 관리, 서비스 연계, 이용자 관리, 상담 및 안전관리 등 전문적·관리적 성격이 강한 사무로서, 주민의 권리·의무를 직접적으로 설정하거나 제한하는 처분 사무와는 구별됨.

○ 따라서 해당 사무는 지방자치법 제117조제3항에 따른 민간위탁 대상사무에 해당할 수 있다고 판단됨.

○ 민간의 전문성 활용 필요성

- 아이돌봄서비스는 아이돌보미의 모집·교육·관리, 서비스 이용가정에 대한 상담 및 서비스 연계, 아동학대 예방 및 안전관리 등 전문적인 업무를 지속적으로 수행해야 하는 특성이 있음.
- 따라서 관련 분야에서 전문성과 경험을 보유한 민간기관의 인력 및 운영 노하우를 활용하는 것은 일정 부분 타당성이 있다고 판단됨.
- 특히 「아이돌봄 지원법」 자체가 일정한 시설·인력·운영기준을 충족한 기관을 지정하여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전문기관을 통한 운영방식은 제도의 취지에도 부합한다고 볼 수 있음.

7. 종합 검토의견

○ 본 동의안은 「아이돌봄 지원법」에 따른 아이돌봄서비스 제공체계를 구축하고, 신규 설치되는 검단구 아이돌봄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전문성을 갖춘 민간기관에 운영을 위탁하고자 하는 사항임.

○ 「아이돌봄 지원법」 제11조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아이돌봄서비스 제공기관을 지정·운영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 및 별표 3은 지정기준과 지정절차를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으므로 아이돌봄서비스 제공기관 설치·운영의 법적 근거는 인정됨.

○ 또한 「지방자치법」 제117조제3항은 주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않는 관리업무 등을 법인·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므로, 아이돌봄서비스 제공기관의 운영사무를 민간에 위탁하는 것도 가능한 것으로 판단하여 “원안검토”하였음

"인천광역시 검단구 지역돌봄 통합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 이현주 의원 】
의안번호 481

Ⅰ. 제안 경위

○ 의 안 명: 인천광역시 검단구 지역돌봄 통합지원에 관한 조례안

○ 제 안 자: 이현주 의원

○ 제출일자: 2026년 9월 3일

○ 회부일자: 2026년 9월 3일

Ⅱ. 제안 이유

○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이 2026년 3월 27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노쇠·장애·질병·사고 등으로 일상생활 수행에 어려움을 겪는 주민이 살던 곳에서 계속 건강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의료·요양·돌봄 서비스를 통합·연계하기 위한 지역 차원의 지원체계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임.

○ 이에 상위법에서 지방자치단체에 부여한 지역계획 수립, 개인별지원계획 수립, 통합지원회의 운영, 통합지원협의체 및 전담조직 등에 관한 사항과 검단구의 지역적 특성을 반영한 통합지원 사업 등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규정하려는 것임

Ⅲ. 주요 내용

○ 목적 및 용어의 정의(안 제1조 및 제2조)

○ 구청장의 책무 및 통합지원 지역계획 수립·시행(안 제3조 및 제4조)

○ 통합지원 사업 및 사업비 지원(안 제5조)

○ 개인별지원계획 수립 및 통합지원 제공(안 제6조 및 제7조)

○ 통합지원회의 및 전담조직 설치(안 제8조 및 제9조)

○ 통합지원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안 제10조 및 제11조)

○ 교육·홍보 및 관계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안 제12조 및 제13조)

○ 개인정보 보호, 포상 및 사무의 위탁(안 제14조부터 제16조)

○ 다른 조례와의 관계(안 제17조)

Ⅳ. 검토 의견

1. 법적 근거

○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

- 돌봄통합지원법은 노쇠·장애·질병·사고 등으로 일상생활 유지에 어려움을 겪는 사람이 살던 곳에서 계속하여 건강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보건의료, 건강관리, 장기요양, 일상생활돌봄, 주거 등의 서비스를 직접 또는 연계하여 통합적으로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음.
- 또한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지역계획 수립, 통합지원 대상자 조사·발굴, 종합판정, 개인별지원계획 수립, 통합지원 제공 및 점검 등의 역할을 부여하고 있으며, 통합지원협의체와 전담조직을 둘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 특히 법 제20조는 시장·군수·구청장이 통합지원협의체를 두도록 하면서 지역사회보장협의체와 통합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법 제21조는 전담조직 설치·운영에 관한 근거를 두고 있음

○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시행령은 통합지원 대상자의 범위 및 종합판정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하고 있음.
- 현행 시행령상 통합지원 대상자는 기본적으로 ① 65세 이상인 사람, ② 일정 요건을 갖춘 장애인, ③ 그 밖에 통합지원이 필요한 취약계층 등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과 협의하여 인정하는 사람 가운데 노쇠·장애·질병·사고 등으로 일상생활 유지에 어려움이 있어 복합적인 지원이 필요한 사람을 의미함.
- 또한 종합판정은 신체기능 및 일상생활 수행능력, 질병 여부 등 의료서비스 필요성, 영양상태, 주거환경 등을 고려하도록 하고 있으며, 조

사 업무의 일부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하는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시행규칙은 지역계획을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35조의 지역사회보장계획과 연계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또한 개인별지원계획의 수립 및 통합지원회의의 구성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며, 통합지원회의에는 시·군·구 담당자, 보건소·읍·면·동 담당자, 통합지원 관련기관, 전문기관 담당자 및 보건의료·건강·주거·돌봄 분야 전문가 등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 전문기관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하며, 현행 시행규칙에서는 국민건강보험공단, 국민연금공단, 중앙 및 시·도 사회서비스원, 한국장애인개발원 등을 전문기관으로 정하고 있음.

○ 「지방자치법」

- 「지방자치법」 제28조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으므로, 돌봄통합지원법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구체화하는 본 조례의 제정은 원칙적으로 가능함.
- 다만,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조례로 정하려는 경우에는 법률의 위임이 필요하므로, 조례에서 주민에게 새로운 의무를 부과하거나 권리를 제한하는 내용이 포함되지 않도록 주의할 필요가 있음

2. 주요 개정 내용 검토

○ 안 제4조(지역계획 수립 및 시행)

- 제3항에서 ‘「사회보장기본법」 제19조의 사회보장에 관한 지역 계획 및 「사회보장급여법」의 지역사회보장계획, 「지역보건법」 제7조의 지역보건의료계획과 연계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현행 시행규칙은 돌봄통합지원 지역계획을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35조에 따른 지역사회보장계획과 연계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따라서 지역계획 수립 시 다른 관련법규 인용이 입법 체계상 적법한지 부서 의견이 필요해 보임

○ 안 제14조(개인정보 등의 보호)

- 개인별지원계획 및 통합지원 과정에서 의료·요양·복지 등 민감한 개인정보가 처리될 수 있으므로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규정을 두는 것은 필요함.
- 현재 조문은 「개인정보 보호법」 및 「사회보장기본법」 제38조 제1항을 준수하도록 하고 있으나, 돌봄통합지원법 자체에도 통합지원 관련 비밀보호 규정이 있으므로 돌봄통합지원법의 관련 규정을 함께 인용하는 것이 보다 체계적일 수 있으나, 개인정보에 관한 총괄적인 「개인정보 보호법」 및 「사회보장기본법」을 인용하는 것이 좀 더 타당할 수 있음

4. 종합 검토의견

○ 본 조례안은 2026년 3월 27일부터 시행된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검단구 차원의 지역돌봄 통합지원 체계를 마련하고, 의료·요양·돌봄·주거 등 다양한 서비스를 연계하여 주민이 살던 곳에서 계속 생활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서 입법 취지와 제정 필요성은 인정됨.

○ 특히 돌봄통합지원법은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지역계획 수립, 대상자 발굴 및 조사, 종합판정, 개인별지원계획 수립, 통합지원 제공·점검 등의 역할을 부여하고 있고, 통합지원협의체 및 전담조직 설치 근거도 마련하고 있으므로, 이를 지역 실정에 맞게 구체화하는 조례 제정의 필요성은 충분하여 “원안검토”하였음

○ 다만, 본 조례안 시행을 위해서는 재원 조달 방안이 선행되어야 하므로 구체적인 방안을 조속히 마련해야 할 것임

붙임 1 관계법령 검토와 발췌 사항

□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지역계획의 수립·시행) ① 시·도지사 및 시장(「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행정시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하며, 이하 "시장·군수·구청장"이라 한다)은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통합지원 지역계획(이하 "지역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시행하되, 지역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통합지원 전달체계의 조직·운영에 관한 사항
2. 통합지원 대상자의 발굴과 지원체계의 구축에 관한 사항
3. 통합지원 재원 조달과 운용에 관한 사항
4. 통합지원 제공 공공기반시설과 자원의 균형 있는 공급 방안
5. 통합지원 관련 부서와 통합지원 관련기관 간의 연계·협력 방안
6. 통합지원 관련 조례·제도의 개선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통합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3조(개인별지원계획의 수립 등) ① 시장·군수·구청장은 관계 법령에 따라 통합지원 대상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개인별지원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안내하여야 한다. 다만, 다른 법령에 따라 수립된 통합지원 대상자에 대한 보건의료등의 지원계획이 포괄적으로 작성되어 있을 경우 개인별지원계획을 대체할 수 있다.

1. 통합지원의 내용, 방법, 수량, 제공 기간 및 제공 주체 등에 관한 사항
2. 통합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법인·단체·시설이 둘 이상인 경우 상호 간 연계 방법
3.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20조(통합지원협의체) ①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관할구역 내에서 통합지원의 원활한 추진과 통합지원 관련기관 등과의 연계·협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통합지원협의체를 둔다. 이 경우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41조에 따른 지역사회보장협의체와 통합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통합지원협의체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심의·자문한다.

1. 지역계획 수립 및 평가에 관한 사항
2. 통합지원 시책 추진에 관한 사항
3. 통합지원 관련기관 등과의 연계·협력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제1항 및 제2항에 규정된 사항 외에 통합지원협의체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

제21조(전담조직 등의 설치·운영) ① 시장·군수·구청장은 통합지원을 위한 전담조직을 둘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전담조직은 통합지원 관련기관 등과 협력하여 통합지원과 관련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제13조에 따른 개인별지원계획의 시행 관리
2. 통합지원 대상자 중심의 통합지원 연계·조정, 모니터링 등 체계 운영
3. 지역자원을 활용한 통합지원 서비스 발굴 및 제공
4. 통합지원 관련기관, 통합지원 관련 부서와의 업무 협의 및 교류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예산 확보·조정
6. 그 밖에 시장·군수·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③ 시장·군수·구청장은 보건소 및 읍·면·동 등에 통합지원 업무를 지원하기 위한 조직을 둘 수 있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전담조직 등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

비 용 추 계 서

1. 비용발생 요인 및 관련 조문

가. 인천광역시 검단구 돌봄 통합지원에 관한 조례 제5조(통합지원 사업 추진)
나. 인천광역시 검단구 돌봄 통합지원에 관한 조례 제12조(교육 및 홍보)

2. 비용추계 결과

가. 추계의 전제

1) 본 비용추계는 행정구역 분구에 따라 신설되는 검단구가 의료 요양 돌봄 통합업무를 수행함에 있음.

2) 비용추계를 위한 가격기준은 기준연도(분구 시행연도) 검단구에 편성된 의료•요양•돌봄 통합지원(공무원 인건비) 예산을 기준으로 하였으며, 이를 토대로 비용추계를 실시함

나. 추계 결과

1) 검단구에 편성된 기준연도(분구 시행연도)예산은 157,800천원

2) 이를 기준으로 연 5%의 자연증가율을 적용할 경우, 향후 5개년간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 총 세출 규모는 **약 1,144,981천원임**

다. 재원조달 방안 : 총소요예산 1,144,981천원중 792,737천원 국시비(보조금)으로 충당하고, 나머지 352,244천원은 구자체 일반회계(지방세 및 세외수입)를 통해 충당함.

3. 연도별 비용 추계표 : 붙임참조

4. 부대의견 : 해당없음

작성자 : 검단구 복지정책과장 김 명 진

연도별 비용 추계표

(단위 : 천원)

구 분			1차년도 (2026년)	2차년도 (2027년)	3차년도 (2028년)	4차년도 (2029년)	5차년도 (2030년)	계
세 입			157,800	198,000	138,600	145,530	152,807	**792,737**
511-01 국고보조금			127,200	154,000	92,400	97,020	101,871	572,491
521-01 시·도비보조금등			30,600	44,000	46,200	48,510	50,936	220,246
세 출			254,400	308,000	184,800	194,040	203,741	**1,144,981**
201-01 사무관리비			2,400	50,000	52,500	55,125	57,881	**217,906**
307-11 사회복지사업보조			120,000	126,000	132,300	138,915	145,860	**663,075**
101-01 보수			132,000	132,000	-	-	-	**264,000**
재원 조달			157,800	198,000	138,600	145,530	152,807	**792,737**
의존재원	소 계		157,800	198,000	138,600	145,530	152,807	**792,737**
	보조금	국비	127,200	154,000	92,400	97,020	101,871	572,491
		시비	30,600	44,000	46,200	48,510	50,936	220,246
	지방교부세		-	-	-	-	-	-
	조정교부금		-	-	-	-	-	-
자체수입	소 계		96,600	110,000	46,200	48,510	50,934	**352,244**
	지방세		48,300	55,000	23,100	24,255	25,467	**176,122**
	세외수입		48,300	55,000	23,100	24,255	25,467	**176,122**
지 방 채			-	-	-	-	-	-
기 금			-	-	-	-	-	-
공기업 특별회계			-	-	-	-	-	-
기 타 (채무부담, 민자 등)			-	-	-	-	-	-

"인천광역시 검단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 이현주 의원 】

의안번호 482

Ⅰ. 제안 경위

○ 의 안 명: 인천광역시 검단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제 안 자: 이현주 의원

○ 제출일자: 2026년 9월 3일

○ 회부일자: 2026년 9월 3일

Ⅱ. 제안 이유

○ 2026년 7월 1일 검단구 출범에 따라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통합지원협의체의 업무를 기존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기능에 포함시킴으로써 지역 내 의료·요양·돌봄·주거 등 관련 서비스의 연계와 협력을 강화하고자 하는 것임

Ⅲ. 주요 내용

○ 안 제3조에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 제20조에 따른 통합지원협의체의 업무에 관한 사항을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기능으로 추가하려는 것임

Ⅳ. 검토 의견

1. 법적 근거

○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은 노쇠, 장애,

질병, 사고 등으로 일상생활 수행에 어려움을 겪는 사람이 자신이 살던 곳에서 계속 건강하고 인간다운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의료·요양 등 돌봄 지원을 통합·연계하여 제공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한 법률임.

○ 특히 같은 법 제20조제1항에서는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으로 하여금 관할구역 내 통합지원의 원활한 추진과 통합지원 관련기관 등의 연계·협력 강화를 위하여 통합지원협의체를 두도록 규정하고 있음.

○ 또한 같은 조 단서에서는 통합지원협의체를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41조에 따른 지역사회보장협의체와 통합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음.

○ 아울러 같은 조 제3항에서는 통합지원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2. 검토의견

○ 개정의 필요성 및 법적 근거

- 본 개정안은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 제20조에 따른 통합지원협의체의 업무를 기존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수행할 수 있도록 조례상 기능을 정비하려는 것임.
- 상위법에서는 시장·군수·구청장이 통합지원협의체를 두도록 하면서도, 기존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41조에 따른 지역사회보장협의체와 통합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명시적으로 허용하고 있음.
- 이에 따라 별도의 통합지원협의체를 새로 설치하지 않고 기존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기능에 통합지원협의체 업무를 추가하여 운영하는 것은 상위법의 취지에 부합하는 것으로 판단됨.
- 특히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이미 지역 내 사회보장 관련 기관·단체 및 서비스 제공기관과의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통합돌봄 추진을 위한 별도의 협의체를 중복 설치하는 것보다 기존 협의체를 활용하는 것이 위원회 운영의 효율성 및 행정력 절감 측면에서도 합리적인 방안으로 판단됨.

○ 통합지원협의체 업무 추가의 적정성

- 개정안에서 추가하려는 통합지원협의체의 업무는 지역계획 수립 및 평가, 통합지원 시책 추진, 관련기관과의 연계·협력 등에 관한 사항임.

- 이는 기존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수행하는 지역사회보장계획 및 사회보장 관련 서비스의 연계·협력 기능과 상당한 관련성이 있으므로, 이를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기능에 추가하는 것은 제도적·기능적 측면에서 적정한 것으로 판단됨.
- 또한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은 지방자치단체가 의료·요양·돌봄·주거 등 다양한 분야의 서비스를 통합적으로 연계하여 제공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한 것으로,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이러한 지역 단위의 협력체계 역할을 수행하도록 하는 것은 법률의 입법취지에도 부합함

○ 종합 검토의견

-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 제20조에 따라 설치·운영되는 통합지원협의체를 기존 지역사회보장협의체와 통합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한 상위법의 규정을 반영하여,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기능에 통합지원협의체의 업무를 추가하려는 것임.
- 이는 별도의 협의체를 중복적으로 설치하는 대신 기존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민관 협력체계를 활용하여 의료·요양·돌봄·주거 등 지역 내 다양한 서비스의 통합 및 연계를 강화하려는 것으로서, 상위법의 취지와 률상 통합운영 규정에 부합하고 조례 개정의 필요성도 인정된다고 할 것임.
- 이에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에 부합하고 개정의 필요성이 인정되어 “원안검토”하였음.

“인천광역시 검단구 대한적십자사 봉사회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 홍순서 의원 】
의안번호 483

Ⅰ. 제안 경위

○ 의 안 명: 인천광역시 검단구 대한적십자사 봉사회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

○ 제 안 자: 홍순서 의원

○ 제출일자: 2026년 9월 3일

○ 회부일자: 2026년 9월 3일

Ⅱ. 제안 이유

○ 본 조례안은 「인천광역시 제물포구·영종구 및 검단구 설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행정체제 개편에 따라 검단구 지역에서 활동하는 대한적십자사 봉사회의 재난구호, 사회봉사, 보건 의료 및 지역사회 복지증진 등의 활동을 지원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으로, 지역사회 내 자원봉사활동을 활성화하고 재난 및 각종 위기상황에서의 구호활동과 주민 복리증진에 기여하려는 취지임

Ⅲ. 주요 내용

○ 안 제1조 및 제2조에서는 조례의 목적을 규정하고, “대한적십자사 봉사회”, “봉사회 회원”, “봉사회 사업”의 의미를 규정함

○ 안 제3조에서는 재난 관련 구호사업, 사회봉사활동, 보건의료·안전활동, 지역사회 복지증진, 헌혈 및 헌혈 권장사업 등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함

○ 안 제4조에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하고, 사업계획서 제출 및 실적보고서 작성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 안 제5조에서는 봉사회 회원이 자원봉사활동 중 발생할 수 있는 사고에 대비하여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할 수 있도록 규정함

○ 안 제6조에서는 봉사회 활동을 통하여 지역사회 발전 및 인도주의 실현에 기여한 공로가 현저한 단체 또는 사람에게 표창할 수 있도록 규정함

Ⅳ. 검토 의견

1. 법적 근거

○ 「대한적십자사 조직법」 제7조에서는 적십자사의 사업으로 ▲재난을 당한 사람에 대한 구호사업 ▲의료·혈액사업 ▲응급구호사업 ▲자원봉사사업 ▲관련 교육사업 ▲국민 보건 및 사회복지에 관한 사업 ▲적십자 이념 및 국제인도법의 보급사업 등을 규정하고 있음.

따라서 본 조례안에서 규정하고 있는 재난구호, 보건 의료, 응급구호, 사지역사회 복지증진 및 헌혈 관련 사업 등은 대한적십자사의 법정 사업과 밀접한 관련성이 있어 조례의 지원대상 사업으로 정하는 것은 입법목적상 타당한 것으로 판단됨.

다만, 「대한적십자사 조직법」은 적십자사의 사업을 규정한 법률이지 지방자치단체가 봉사회에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는 직접적인 근거를 규정한 법률은 아니라는 점에 유의할 필요가 있음.

따라서 보조금 지급은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등 지방보조금 관련 법령 및 검단구 조례에 따른 요건을 충족하여야 할 것임

○ 「자원봉사활동 기본법」 제3조에서는 자원봉사활동을 지역사회·국가 및 인류사회를 위하여 대가 없이 자발적으로 시간과 노력을 제공하는 행위로 정의하고 있으며, 자원봉사단체를 자원봉사활동을 주된 사업으로 하거나 이를 지원하기 위하여 설립된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로 규정하고 있음.

또한 같은 법 제4조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자원봉사활동의 진흥에 관한 시책을 마련하여 국민의 자원봉사활동을 권장하고 지원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같은 법 제14조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자원봉사활동이 안전한 환경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고, 자원봉사자에 대한 보험 가입 등 보호에 필요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따라서 안 제5조의 봉사회 회원에 대한 보험 또는 공제 가입 규정은 자원봉사자의 안전과 보호를 위한 법률의 취지에 부합하는 것으로 판단됨

○ 「지방자치법」 제12조는 지방자치단체가 사무를 처리할 때 주민의 편의와 복리증진을 위하여 노력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제13조는 지방자치단체가 관할 구역의 자치사무와 법령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속하는 사무를 처리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또한 같은 법상 지역주민 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사무는 원칙적으로 시·군 및 자치구의 사무로 배분하도록 하고 있음.

재난구호, 사회봉사, 취약계층 지원 및 지역사회 복지증진 등은 지역주민의 복리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사항이므로, 이를 수행하는 봉사활동을 지원하는 것은 지방자치단체의 자치사무 및 주민복리 증진의 범위에서 검토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

2. 주요 내용 검토

○ 안 제3조(사업지원)

- 재난 관련 구호사업, 사회봉사활동, 보건의료 및 안전활동, 지역사회 복지증진, 헌혈 관련 사업 등은 「대한적십자사 조직법」에서 정하고 있는 적십자사의 사업과 「자원봉사활동 기본법」상 자원봉사활동의 범위와 상당 부분 일치하므로 지원 필요성이 인정됨.
- 특히 재난관리 및 재해구호, 사회복지 및 보건 증진 등은 자원봉사활동의 주요 범위에 해당하므로 지방자치단체가 이를 지원하는 것은 법률의 취지에도 부합함.
- 다만 제3조 본문에서 “봉사회의 운영 및 사업의 원활한 사업 수행”이라고 규정하는 경우 봉사회 자체의 일반적인 운영비 지원까지 허용하는 것으로 해석될 소지가 있어 관련 규정을 살펴 보조금을 지급해야 함.

○ 중복지원 방지 등 내부 방침 필요

-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6조제3항은 지방보조금이 중복으로 교부되거나 부적격자에게 교부되지 않도록 지원 이력 등을 체계적으로 관리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이에 따라 본 조례에도 중복지원 방지를 위한 조항을 두는 것이 지방보조금의 효율적 관리라는 측면에서 바람직하나, 내부 방침 또는 다른 규정에 따라 중복지원을 예방하는 방안 마련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3. 종합 검토의견

○ 본 조례안은 대한적십자사 봉사회가 수행하는 재난구호, 사회봉사, 보건 의료, 응급구호, 지역사회 복지증진 및 헌혈 등 공익적 활동을 지원함으로써 지역사회 자원봉사활동을 활성화하고 주민의 복리증진에 기여하기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으로 그 입법취지와 필요성이 인정됨.

특히 「대한적십자사 조직법」은 적십자사의 재난구호, 의료・혈액, 응급 구호, 자원봉사, 사회복지 등의 사업을 명시하고 있고, 「자원봉사활동 기본법」 역시 지방자치단체가 자원봉사활동을 권장・지원하고 자원봉사자의 안전을 도모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본 조례안의 사업 지원 및 보험가입 규정은 상위법령의 취지와 부합함.

○ 다만, 지방보조금의 중복교부 방지를 위해 중복지원 금지 조항을 신설하고, 지방보조금 신청・교부・정산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인천광역시 검단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르도록 정비하는 것이 법체계상 적절할 것으로 판단되나, 다른 방안으로 보조금 중복 지급을 제한할 수 있다면 그에 따른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임

○ 본 조례안은 상위법 등 위배됨이 없어 “원안검토” 하였음

붙임1 관계법령 검토와 발췌 사항

□ 대한적십자사 조직법

제7조(사업) 적십자사는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제네바협약의 정신에 따른 전시포로 및 무력충돌희생자 구호사업
2. 전시(戰時)에 군 의료보조기관으로서의 전상자 치료 및 구호사업
3. 수재(水災), 화재, 기근(饑饉), 악성 감염병 등 중대한 재난을 당한 사람에 대한 구호사업
4. 의료사업(간호사업 및 혈액사업을 포함한다), 응급구호사업, 자원봉사사업, 이산가족 재회사업, 청소년적십자사업, 관련 교육사업, 그밖에 국민 보건 및 사회복지에 관한 사업
5. 적십자 이념 및 국제인도법의 보급사업
6. 적십자사의 사업 수행을 위한 국제협력사업
7. 그 밖에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사업에 부대되는 사업

□ 자원봉사활동 기본법

제7조(자원봉사활동의 범위) 이 법의 적용을 받는 자원봉사활동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사회복지 및 보건 증진에 관한 활동
2. 지역사회 개발·발전에 관한 활동
3. 환경보전 및 자연보호에 관한 활동
4. 사회적 취약계층의 권익 증진 및 청소년의 육성·보호에 관한 활동
5. 교육 및 상담에 관한 활동
6. 인권 옹호 및 평화 구현에 관한 활동
7. 범죄 예방 및 선도에 관한 활동
8. 교통질서 및 기초질서 계도에 관한 활동
9. 재난 관리 및 재해 구호에 관한 활동
10. 문화·관광·예술 및 체육 진흥에 관한 활동
11. 부패 방지 및 소비자 보호에 관한 활동

12. 공명선거에 관한 활동
13. 국제협력 및 국외봉사활동
14. 공공행정 분야의 사무 지원에 관한 활동
15. 그 밖에 공익사업의 수행 또는 주민복리의 증진에 필요한 활동

[전문개정 2014. 1. 7.]

제14조(자원봉사자의 보호)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자원봉사활동이 안전한 환경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자원봉사자에 대한 보험의 가입 등 보호의 종류와 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4. 1. 7.]

붙임2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제3조제3항 관련)

1. 비용발생요인

대한적십자사 봉사회의 재난대비 및 구호활동, 사회봉사활동, 보건·안전 활동, 지역사회 복지증진 및 헌혈 관련 사업 등의 추진을 위한 보조금 지원 등에 따라 비용이 발생할 수 있음.

2. 미첨부 근거 규정

조례안에 따른 지원은 예산의 범위에서 이루어지며,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5천만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1억5천만원 미만인 경우 「인천광역시 검단구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1항제1호에 따라 비용추계서를 첨부하지 않을 수 있음.

3. 미첨부 사유

본 조례안에 따른 재정지원에 소요되는 비용은 연평균 5천만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1억5천만원 미만인 경우로 예상되어 「인천광역시 검단구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제3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비용추계서 미첨부 대상에 해당함.

작성자 : **복지국 복지정책과장 김명진**

"검단구 다함께돌봄센터 10호점, 11호점 민간위탁 동의안"

검 토 보 고 서

【 검단구청장 】
의안번호 477

Ⅰ. 제안 경위

○ 의 안 명: 검단구 다함께돌봄센터 10호점,11호점 민간위탁 동의안

○ 제 안 자: 검단구청장

○ 제출일자: 2026년 9월 3일

○ 회부일자: 2026년 9월 3일

Ⅱ. 제안 이유

○ 검단구 다함께돌봄센터 10호점 및 11호점 신규 설치에 따라 아동의 방과 후 돌봄서비스를 안정적으로 제공하고,

○ 돌봄서비스에 대한 전문성과 운영 경험을 갖춘 법인 또는 단체에 센터 운영을 위탁하여 아동에게 안전하고 질 높은 돌봄서비스를 제공하고자,

○ 「검단구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사항임

Ⅲ. 주요 내용

○ 위탁대상 시설 현황

구분	10호점	11호점
소재지	고산후로 249(힐스테이트 신검단 센트럴)	독정로 57(인천검단LH 38단지)
면적	73.87㎡	111.7㎡
정원	20명	20명
종사자	2명	2명

○ 위탁기간 위탁일로부터 5년

○ 위탁사무

- 다함께돌봄센터 운영 및 관리 전반
  - · 돌봄서비스 운영 및 평가·모니터링
  - · 돌봄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 · 이용아동 모집
  - · 종사자 채용 및 관리
  - · 시설물 관리 및 유지·보수
  - · 급·간식, 위생·건강 및 안전관리
  - · 보호자 상담 및 운영위원회 운영
  - · 그 밖에 센터 운영에 필요한 사항

○ 수탁자 선정방법

- 공개모집 후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 심사를 거쳐 선정

○ 소요예산

- 5년간 총 1,318,277천원
  - ·국비 : 473,175천원
  - ·시비 : 419,461천원
  - ·구비 : 425,641천원

Ⅳ. 검토 의견

1. 법적 근거

○ 「아동복지법」 제44조의2

- 「아동복지법」 제44조의2제1항은 시장·군수·구청장이 초등학교 정규교육 이외의 시간에 아동의 안전한 보호, 급·간식 제공, 등·하교 전후 돌봄, 체험활동 및 교육·문화·예술·체육 프로그램, 돌봄 상담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다함께돌봄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 또한 같은 조 제2항에서는 시장·군수·구청장이 다함께돌봄센터의 설치·운영을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도록 명시하고 있음.
- 따라서 다함께돌봄센터의 민간위탁 자체에 대한 법률상 근거는 타당

한 것으로 판단됨

○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

- 다함께돌봄센터는 2019년부터 사회복지시설로 규율되고 있으며, 2026년 다함께돌봄 사업 안내에서도 이를 명시하고 있음.
-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 제5항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한 사회복지시설을 필요한 경우 사회복지법인이나 비영리법인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 따라서 본 동의안에서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에 운영을 위탁하려는 것은 법률상 위배됨이 없음

○ 「아동복지법 시행규칙」 제21조의2 및 2026년 사업 안내

- 「아동복지법 시행규칙」 제21조의2는 다함께돌봄센터의 설치·운영 기준 및 종사자의 자격 기준을 별표 1의 2에서 정하도록 하고 있음.
- 또한 보건복지부의 2026년 사업안내에서는 다함께돌봄센터의 설치기준, 위탁기준, 수탁자 신청자격, 종사자 배치 및 운영 등에 관한 구체적인 기준을 제시하고 있음. 2026년 사업안내는 위탁운영을 전문성 활용 및 지역사회 참여를 위한 예외적 운영방식임

2. 검토의견

○ 다함께돌봄센터 민간위탁의 법적 근거는 타당함

- 다함께돌봄센터는 「아동복지법」 제44조의2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설치·운영할 수 있는 시설이며, 같은 조 제2항에서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도록 명시하고 있음.
- 또한 다함께돌봄센터는 사회복지시설에 해당하므로 「사회복지사업법」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 따른 사회복지시설 위탁기준을 적용할 수 있음.
- 따라서 신규 설치되는 10호점과 11호점의 운영을 민간 전문기관에 위탁하려는 위탁방식은 특별한 법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 공개모집 및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 방식은 적정함

-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1조는 사회복지시설의 수탁자 선정 시 공개모집과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의 심의를 원칙으로 하고 있음.
- 따라서 본 동의안에서 공개모집을 실시하고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수탁기관을 선정하도록 한 것은 관계 법령에 부합함.
- 다만 실제 수탁자 선정 시에는 단순히 법인의 형식적 자격만을 확인

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①다함께돌봄센터 운영실적, ②아동돌봄 분야 전문성, ③센터장 및 종사자 확보계획, ④재정능력 및 자부담 능력, ⑤아동 안전관리계획, ⑥프로그램 운영계획, ⑦지역사회 자원 연계방안 등 을 종합적으로 심사할 필요가 있음

○ 5년 위탁기간은 관계 법령에 부합함

- 본 동의안은 위탁기간을 5년으로 하고 있는데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1조의2 제2항은 위탁계약기간을 5년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본 동의안의 위탁기간은 법령상 기준에 부합함

○ 비용추계 및 구비 부담에 대한 검토

- 본 동의안의 5년간 총사업비는 1,318,277천원이며, 구비 부담은 5년간 약 4억 2,564만원, 연평균 약 8,513만원 수준임.
- 다함께돌봄센터는 국가가 설치·운영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는 국고보조사업으로 운영되고 있으나, 국·시비 지원 비율 및 사업 내용의 변경 등에 따라 향후 구비 부담이 증가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중장기적으로 재정 부담을 관리할 필요가 있음.
- 특히 10호점·11호점 이후 추가적인 다함께돌봄센터 설치가 계속될 경우 센터 증가에 따른 누적적인 구비 부담 규모를 함께 관리할 필요가 있음

○ 종합 검토의견

- 본 동의안은 검단구 다함께돌봄센터 10호점 및 11호점을 신규 설치하고, 아동 돌봄서비스의 전문성과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민간 전문 기관에 5년간 위탁 운영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아동복지법」 제44조의2에서 다함께돌봄센터의 설치·운영 및 위탁의 법적 근거를 두고 있고,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사회복지시설의 위탁 방법과 위탁 기간 등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민간 위탁 추진의 법적 근거와 필요성은 인정되는 것으로 판단됨.
- 또한 공개 모집을 거쳐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의 심사를 통해 수탁자를 선정하고, 위탁 기간을 5년으로 정한 사항도 관련 법령의 취지에 부합한 것으로 사료되어 “원안검토” 하였음

관계법령 발췌

□ 아동복지법 제44조의2(다함께돌봄센터)

①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초등학교의 정규교육 이외의 시간 동안 다음 각 호의 돌봄서비스(이하 “방과 후 돌봄서비스”라 한다)를 실시하기 위하여 다함께돌봄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1. 아동의 안전한 보호
2. 안전하고 균형 있는 급식 및 간식의 제공
3. 등·하교 전후, 야간 또는 긴급상황 발생 시 돌봄서비스 제공
4. 체험활동 등 교육·문화·예술·체육 프로그램의 연계·제공
5. 돌봄 상담, 관련 정보의 제공 및 서비스의 연계
6. 그 밖에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방과 후 돌봄서비스의 제공

②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다함께돌봄센터의 설치·운영을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③ 국가는 다함께돌봄센터의 설치·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방자치단체에 지원할 수 있다.

④ 다함께돌봄센터의 장은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아동의 보호자에게 제1항 각 호의 방과 후 돌봄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부담하게 할 수 있다.

⑤ 다함께돌봄센터의 설치기준과 운영, 종사자의 자격 등에 관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 (사회복지시설의 설치)

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사회복지시설(이하 “시설”이라 한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가 시설을 설치·운영하려는 경우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시설의 설치·운영 신고를 할 수 없다.

1. 제40조에 따라 폐쇄명령을 받고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2. 제19조제1항제1호 및 제1호의2부터 제1호의8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개인 또는 그 개인이 임원인 법인

③ 시장·군수·구청장은 제2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경우 그 내용을 검토하여 이 법에 적합하면 신고를 수리하여야 한다.

④ 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재무·회계에 관한 기준에 따라 시설을 투명하게 운영하여야 한다.

⑤ 제1항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한 시설은 필요한 경우 사회복지법인이나

비영리법인에 위탁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다.

⑥ 제5항에 따른 위탁운영의 기준·기간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1조 (시설의 위탁기준 및 방법)

①법 제34조제5항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한 시설을 위탁하여 운영하려는 경우에는 공개모집에 따라 수탁하는 법인(이하 “수탁자”라 한다)을 선정해야 한다. 다만,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사회복지사업을 할 목적으로 설립한 비영리법인에 위탁하여 운영하려는 경우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경우에는 공개모집을 하지 않을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른 시설의 수탁자 선정을 위하여 해당 시설을 설치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이하 “위탁기관”이라 한다)에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이하 “선정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③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라 수탁자를 선정하려는 경우에는 수탁자의 재정적 능력, 공신력, 사업수행능력, 지역간 균형분포 및 제27조의2에 따른 평가결과(평가를 한 경우에만 해당한다)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하며, 제2항에 따른 선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④선정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위탁기관의 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며,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위탁기관의 장이 지명한다.

1. 사회복지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2. 사회복지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3. 공익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4. 그 밖에 법률전문가 등 선정위원회 참여가 필요하다고 위탁기관의 장이 인정하는 사람

⑤선정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제4항 및 제5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선정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탁기관의 장이 정한다.

□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1조2 (시설의 위탁)

①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법 제34조제5항에 따라 시설을 위탁하여 운영하고자 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1. 수탁자의 명칭, 주소 및 대표자의 이름
2. 위탁계약기간
3. 위탁대상시설 및 업무내용
4. 수탁자의 의무 및 준수 사항

5. 시설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5의2. 시설종사자의 고용승계에 관한 사항
6. 계약의 해지에 관한 사항
7. 기타 시설의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②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탁계약기간은 5년으로 한다. 다만, 위탁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제21조제2항에 따른 선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계약기간을 갱신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위탁자는 수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제1항에 따른 계약 체결 내용과 달리 운영하는 경우
2. 위탁받은 사회복지법인이나 비영리법인의 설립허가가 취소된 경우

□ 인천광역시 검단구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4조 (민간위탁 대상 사무의 기준 등)

① 구청장은 「지방자치법」 제117조제3항에 따라 그 소관 사무 중 조사·검사·검정·관리업무 등 주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않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민간위탁할 수 있다.
1. 단순 사실행위인 행정작용
2. 공익성보다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
3. 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이 필요한 사무
4. 그 밖에 국민 생활과 직결된 단순 행정사무

② 구청장은 제1항 각 호의 사무에 대해 민간위탁을 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민간위탁의 적정성을 미리 검토하여야 한다.
1. 민간위탁이 아닌 다른 방식으로 사무를 수행할 수 있는 가능성
2. 서비스 공급의 공공성 및 안정성
3. 민간위탁의 경제적 효율성
4. 민간의 전문지식 및 기술 활용 가능성
5. 민간위탁하려는 사무의 성과 측정의 용이성
6. 민간위탁하려는 사무의 관리 및 운영의 투명성
7. 민간위탁하려는 사무와 관련된 민간 서비스의 공급 현황
8. 그 밖에 민간위탁의 적정성 검토를 위해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비 용 추 계 서(제3조제1항 관련)

1. 비용발생 요인 및 관련 조문

○ 비용발생 요인: 아동복지시설(다함께돌봄센터) 운영지원

○ 관련조문

-「아동복지법」제44조의2(다함께돌봄센터)

③ 국가는 다함께돌봄센터의 설치·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방자치단체에 지원할 수 있다.

-「사회복지사업법」제42조(보조금 등)

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사회복지사업을 하는 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에게 운영비 등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2. 비용추계 결과

가. 추계의 전제

○ 비용산정의 기준연도는 2026년도로 하였으며, 추계기간은 위탁기간인 5년으로 함.

○ 운영비, 인건비, 임금보전비는 물가상승률 및 임금인상률을 고려하여 연 2.5%의 증가율을 적용하여 산정함.

○ 종사자 처우개선사업비 및 학습교구비 등은 현행 사업 규모를 유지하는 것으로 가정하여 2026년도 기준 금액을 추계기간 동안 동일하게 적용함.

나. 추계 결과

○ 본 의안 시행에 따른 총 소요비용은 추계기간 5년간 1,318백만원으로 산정되며. 재원구성은 국비 473백만원, 시비 420백만원, 구비 425백만원임.

다. 재원조달 방안

○ 운영비, 인건비는 국비 50%, 시비 25%, 구비 25%

○ 임금보전비는 시비 50%, 구비 50%, 추가운영비는 전액 구비

○ 급식비 및 관리자수당, 건강검진비, 복지점수, 학습교구비는 전액 시비

3. 연도별 비용 추계표 : 붙임

4. 부대의견 : 없음

작성자 : 복지국 아동보육과장 김소연

□ 검토 의견

○ 아동복지시설(다함께돌봄센터) 운영지원 관련하여 「아동복지법」 제44조의2(다함께돌봄센터)와 「사회복지사업법」 제42조(보조금 등)에서 운영비 등 일부를 보조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음

○ 연도별 비용 추계표는 자체재원 세입을 반영하여 세입과 세출을 일치시켜야 함. 현행 사업 규모를 유지하고 2.5%의 증가율을 적용하는 것으로 가정되었으며, 추계기간 5년간 구비 425백만원이 필요한 것으로 산출됨

○ 다함께돌봄센터의 비용증가가 향후 재정운영에 부담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으나, 아동복지시설이며, 국가보조금 사업인점을 고려하여, 필수적인 구비 소요액으로 진행하도록 검토 의견 회신함

○ 본 내용은 비용추계에 대한 사전협의 의견으로, 예산편성 요구에 대한 조정안은 아니며, 향후 실질적인 사업예산 편성 시 사업 추진부서와 소통하고 세부적인 사항을 고려하여 검토하겠음

연도별 비용 추계표(2개소 기준)

(단위 : 천원)

구 분			1차년도 (2026년)	2차년도 (2027년)	3차년도 (2028년)	4차년도 (2029년)	5차년도 (2030년)	계
세 입			**251,908**	**257,637**	**263,509**	**269,527**	**275,696**	**1,318,277**
다함께돌봄센터 운영지원(국·시비)			170,346	174,336	178,425	182,616	186,913	**892,636**
다함께돌봄센터 운영지원(구비)			81,562	83,301	85,084	86,911	88,783	**425,641**
세 출			**251,908**	**257,637**	**263,509**	**269,527**	**275,696**	**1,318,277**
다함께돌봄센터 운영비			26,320	26,978	27,653	28,344	29,052	**138,347**
다함께돌봄센터 인건비			153,720	157,563	161,502	165,539	169,678	**808,002**
다함께돌봄센터 임금보전비			49,104	50,332	51,590	52,880	54,202	**258,108**
다함께돌봄센터 급식비 및 관리자수당			7,200	7,200	7,200	7,200	7,200	**36,000**
다함께돌봄센터 건강검진비			400	400	400	400	400	**2,000**
다함께돌봄센터 복지점수			1,300	1,300	1,300	1,300	1,300	**6,500**
다함께돌봄센터 추가운영비			12,000	12,000	12,000	12,000	12,000	**60,000**
다함께돌봄센터 학습교구비			1,864	1,864	1,864	1,864	1,864	**9,320**
재원 조달			**251,908**	**257,637**	**263,509**	**269,527**	**275,696**	**1,318,277**
의존재원	소 계		170,346	174,336	178,425	182,616	186,913	**892,636**
	보조금	국비	90,020	92,271	94,577	96,941	99,366	**473,175**
		시비	80,326	82,065	83,848	85,675	87,547	**419,461**
	지방교부세		-	-	-	-	-	-
	조정교부금		-	-	-	-	-	-
자체수입	소 계		**81,562**	**83,301**	**85,084**	**86,911**	**88,783**	**425,641**
	구비		81,562	83,301	85,084	86,911	88,783	**425,641**
지 방 채			-	-	-	-	-	-
기 금			-	-	-	-	-	-
공기업 특별회계			-	-	-	-	-	-
기 타 (채무부담, 민자등)			-	-	-	-	-	-

"검단구 육아종합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검 토 보 고 서

【 검단구청장 】
의안번호 478

Ⅰ. 제안 경위

○ 의 안 명: 검단구 육아종합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 제 안 자: 검단구청장

○ 제출일자: 2026년 9월 3일

○ 회부일자: 2026년 9월 3일

Ⅱ. 제안 이유

○ 본 동의안은 2027년 1월 개소 예정인 검단구 육아종합지원센터의 효율적이고 전문적인 운영을 위하여 보육 관련 전문성을 갖춘 민간기관 등에 운영을 위탁하고자 「인천광역시 검단구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 따라 검단구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사항임.

○ 수탁기관은 공개모집을 통하여 선정하고, 보육정책위원회의 심사·심의를 거쳐 보육 관련 전문성 및 운영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최고득점 기관을 선정하는 내용임

Ⅲ. 주요 내용

○ 위탁대상 시설 현황

구분	검단구 육아종합지원센터	도담도담 장난감월드 검단점
소재지	완정로 18, 한올메디컬센터 6층	완정로 18, 한올메디컬센터 6층
면적	125.62㎡	363.64㎡
종사자	5	6

○ 위탁기간 : 2027.1.1.~2031.12.31.(5년)

○ 위탁사무

- 육아종합지원센터 운영 및 관리 전반
- 도담도담 장난감월드 운영 및 관리 전반
- 그밖에 구청장이 보육사업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수탁자 선정방법

- 공개모집 후 보육정책위원회 심사를 거쳐 선정

○ 소요예산

- 5년간 총 10,555백만원
  - ・국비 : 2,850백만원
  - ・시비 : 2,596백만원
  - ・구비 : 5,108백만원

Ⅳ. 검토 의견

1. 육아종합지원센터 민간위탁의 법적 적정성

○ 본 동의안은 「영유아보육법」 제7조에 따른 지방육아종합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하고, 같은 법 제51조의2에 따라 그 운영업무를 민간기관 등에 위탁하려는 사항임.

○ 상위법에서 지방육아종합지원센터 운영의 민간위탁을 명시적으로 허용하고 있고, 시행령에서 수탁기관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으며, 검단구 조례에서도 위탁 근거와 최초 위탁 시 공개경쟁 원칙 및 5년의 위탁기간을 규정하고 있음.

○ 따라서 육아종합지원센터 운영 자체를 민간 위탁하는 것에 대한 법적 근거에는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2. 종합 검토의견

○ 본 동의안은 「영유아보육법」 제7조에 따라 설치・운영되는 지방육아종합지원센터의 운영을 같은 법 제51조의2 및 시행령 제26조의2에 따라 전문성을 갖춘 민간기관 등에 위탁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육아종합지원센터 운영의 민간 위탁에 대한 상위법령상 근거가 명확하게 마련되어 있음.

○ 또한 「인천광역시 검단구 영유아보육 조례」에서도 육아종합지원센터의 민간 위탁을 허용하면서 최초 위탁은 공개경쟁으로 하도록 하고, 위탁 기간을 5년으로 규정하고 있어 공개 모집을 통한 5년간의 민간 위탁 추진은 관련 규정에 부합하는 것으로 판단됨.

○ 아울러 육아종합지원센터는 보육 정보 제공, 어린이집 컨설팅, 보호자 및 보육 교직원 상담·교육, 시간제 보육, 영유아 발달 지원 등 전문적인 업무를 수행하는 시설이라는 점에서 전문적인 인력과 경험을 보유한 기관에 위탁하여 운영하는 것이 행정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확보하는데 긍정적인 측면이 있음

○ 따라서 본 동의안은 상위법 등 저촉되는 사항이 없어 “원안검토”하였음.

관계법령 발췌

□「영유아보육법」 제7조(육아종합지원센터)

①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교육부장관은 중앙육아종합지원센터를,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지방육아종합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영아·장애아 보육 등에 관한 육아종합지원센터를 별도로 설치·운영할 수 있다.

1. 어린이집 운영 전반에 관한 전문 컨설팅
2. 보육에 관한 정보의 수집·제공
3. 보호자 및 보육교직원에 대한 상담 제공
4. 영유아 발달 지연 예방·상담·치료연계 지원
5. 제9조의2에 따른 보호자 교육 지원
6.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보육교직원 교육 제공

가. 보육교직원의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나. 제23조의3에 따른 아동학대 방지를 위한 교육

다. 「아동복지법」 제26조에 따른 아동학대 신고의무자에 대한 교육

6의2. 보육교직원 대체인력의 지원 및 관리

7. 제26조의2에 따른 시간제보육 서비스의 제공
8. 그 밖에 교육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② 제1항에 따른 중앙육아종합지원센터와 지방육아종합지원센터(이하 "육아종합지원센터"라 한다)에는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장과 보육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는 보육전문요원, 보육교직원의 정서적·심리적 상담 등의 업무를 하는 상담전문요원 및 영유아 발달 지연 예방·상담·치료연계 지원 업무를 하는 영유아발달지원전문요원 등을 둔다.

③ 삭제 <2011. 8. 4.>

④ 교육부장관은 업무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 또는 민간기관·단체 등을 제1항에 따른 중앙육아종합지원센터로 지정한다.

⑤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설치·운영 및 기능,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장과 보육전문요원, 상담전문요원 및 영유아발달지원전문요원의 자격 및 직무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⑥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안전사고 예방 및 사고에 따른 영유아 생명·신체 등의 피해보상에 관하여는 제31조의2를 준용한다. 이 경우 "어린이집"은 "육아종합지원센터"로, "어린이집의 원장"은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장"으로 본다.

□「영유아보육법」 제51조의2(업무의 위탁)

① 교육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업무를 공공기관 또는 민간기관·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제2호, 제2호의2 및 제4호의 업무는 진흥원에 위탁할 수 있다.

1. 제7조제1항에 따른 지방육아종합지원센터의 운영업무

1의2. 제9조의3에 따른 보육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에 관한 업무

2. 제22조제1항에 따른 어린이집의 원장 또는 보육교사의 자격 검정 및 보육자격증 교부등에 관한 업무

2의2. 어린이집에 임면되는 보육교직원의 제16조·제20조에 따른 결격사유·결격기간에 관한 정보(보육교직원의 제46조·제47조에 따른 자격정지, 제48조에 따른 자격취소·자격재교부금지기간 및 제23조의3에 따른 교육명령에 관한 정보를 포함한다)의 관리 지원

3. 제23조제1항 및 제23조의2제1항에 따른 보수교육의 실시 업무

4. 제30조제1항에 따른 평가

5. 제34조의3제1항에 따른 이용권에 관한 업무

② 교육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그에 필요한 비용을 보조할 수 있다.

③ 교육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

1. 수탁기관이 제2항에 따라 지급받은 보조금을 목적 외의 용도에 사용하였을 경우

2. 수탁기관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2항에 따른 보조금을 지급받았을 경우

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39조의3(육아종합지원센터 운영위탁)

① 법 제51조의2제1항제1호 및 영 제26조의2제1항에 따라 지방육아종합지원센터의 운영을 위탁받으려는 보육 관련 법인·단체 등은 별지 제19호서식의 지방육아종합지원센터 위탁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지방육아종합지원센터를 관할하는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1. 법인의 정관 및 출연금 등에 관한 서류(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2. 단체의 회칙 또는 규약(단체인 경우만 해당한다)

3. 대표자의 경력사항

4. 지방육아종합지원센터의 장의 자격 및 경력을 증명하는 서류

5. 법인·단체 등의 보육 관련 업무실적을 증명하는 서류

6. 법인·단체 등의 조직 및 운영 현황에 관한 서류

7. 향후 5년간 지방육아종합지원센터의 운영계획서(예산서를 포함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를 확인하여야 한다.

③ 삭제 <2012. 8. 17.>

④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받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지방육아종합지원센터 운영을 위탁받을 기관(이하 이 조에서 “수탁기관”이라 한다)을 선정한 경우에는 수탁기관과 위탁계약을 체결한 후 별지 제20호서식의 지방육아종합지원센터 위탁계약증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⑤ 수탁기관은 법인·단체 등의 대표자 또는 지방육아종합지원센터의 장, 법인의 정관이나 단체의 회칙 또는 규약의 변경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별지 제21호서식의 지방육아종합지원센터 위탁사항 변경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변경 사유서
2. 대표자 경력사항(대표자가 변경되는 경우만 해당한다)
3. 지방육아종합지원센터장의 자격 및 경력을 증명하는 서류(지방육아종합지원센터장이 변경되는 경우만 해당한다)
4. 법인의 정관이나 단체의 회칙 또는 규약(정관·회칙 또는 규약이 변경되는 경우만 해당한다)
5. 지방육아종합지원센터 위탁계약증서

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기존 수탁자의 보육 관련 사업 운영실적 등을 고려하여 지방보육정책위원회 등의 심의를 거쳐 기존 수탁자에게 지방육아종합지원센터의 운영을 재위탁할 수 있다.

□「인천광역시 검단구 영유아보육 조례」제12조(육아종합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① 구청장은 법 제7조에 따라 영유아에게 일시보육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보육에 관한 정보의 수집·제공 및 상담을 위하여 인천광역시 검단구 육아종합지원센터(이하 “육아종합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육아종합지원센터를 직접 운영하거나 영유아보육법 제51조의2 및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제26조의2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최초 위탁은 공개경쟁의 방법에 따른다.

1. 보육 또는 아동복지 관련 학과가 개설된 「고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대학
2.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정부출연기관
3. 그 밖에 보육관련 비영리 법인·단체

③ 제2항에 따라 위탁운영 할 경우 위탁기간은 5년으로 하며, 계약만료 시 업무실적 등을 평가하여 보육정책위원회 심의를 거쳐 재위탁할 수 있다.

□ 인천광역시 검단구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4조 (민간위탁 대상 사무의 기준 등)

① 구청장은 「지방자치법」 제117조제3항에 따라 그 소관 사무 중 조사·검사·검정·관리업무 등 주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않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민간위탁할 수 있다.

1. 단순 사실행위인 행정작용
2. 공익성보다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
3. 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이 필요한 사무
4. 그 밖에 국민 생활과 직결된 단순 행정사무

② 구청장은 제1항 각 호의 사무에 대해 민간위탁을 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민간위탁의 적정성을 미리 검토하여야 한다.

1. 민간위탁이 아닌 다른 방식으로 사무를 수행할 수 있는 가능성
2. 서비스 공급의 공공성 및 안정성
3. 민간위탁의 경제적 효율성
4. 민간의 전문지식 및 기술 활용 가능성
5. 민간위탁하려는 사무의 성과 측정의 용이성
6. 민간위탁하려는 사무의 관리 및 운영의 투명성
7. 민간위탁하려는 사무와 관련된 민간 서비스의 공급 현황
8. 그 밖에 민간위탁의 적정성 검토를 위해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비 용 추 계 서(제3조제1항 관련)

1. 비용발생 요인 및 관련 조문

○ 비용발생 요인: 육아종합지원센터 운영지원

○ 관련조문

-「영유아보육법」제7조(육아종합지원센터)

①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교육부장관은 중앙육아종합지원센터를,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지방육아종합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영아·장애아 보육 등에 관한 육아종합지원센터를 별도로 설치·운영할 수 있다.

-「영유아보육법」제36조(비용의 보조 등)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0조에 따른 어린이집의 설치, 보육교직원(대체교사를 포함한다)의 인건비, 초과보육(超過保育)에 드는 비용 등 운영 경비 또는 **지방육아종합지원센터의 설치·운영**, 보육교직원의 복지 증진, 취약보육의 실시 등 보육사업에 드는 비용, 제15조의4에 따른 폐쇄회로 텔레비전 설치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한다.

2. 비용추계 결과

가. 추계의 전제

○ 비용산정의 기준연도는 육아종합지원센터 개소 년도인 2027년도로 하였으며, 추계기간은 위탁기간인 5년으로 함.

○ 인건비, 사업비는 물가상승률 및 임금인상률을 고려하여 연 2.5%의 증가율을 적용하여 산정함.

나. 추계 결과

○ 본 의안 시행에 따른 총 소요비용은 추계기간 5년간 10,555백만원으로 산정되며. 재원구성은 국비 2,850백만원, 시비 2,596백만원, 구비 5,109백만원임.

다. 재원조달 방안

○ 육아종합지원센터 운영비는 시비 8%, 구비 92%

○ 육아종합지원센터 가정양육(부모교육) 지원사업은 시비 75%, 구비 25%

○ 가정육아 활성화 지원센터 운영비는 시비 20%, 구비 80%

○ 가정육아 활성화 프로그램 보급사업 운영비는 시비 50%, 구비 50%

○ 대체교사 지원사업은 국비 50%, 시비 25%, 구비 25%

○ 도담도담 장난감월드 운영비는 시비 50%, 구비 50%

3. 연도별 비용 추계표 : 붙임

4. 부대의견 : 없음

작성자 : 복지국　아동보육과장　김소연

□ 검토 의견

○ 육아종합지원센터 운영지원 관련하여 「영유아보육법」 제7조(육아종합지원센터)와 「영유아보육법」 제36조(비용의 보조 등)에서 운영비 등 일부를 보조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음

○ 연도별 비용 추계표는 자체재원 세입을 반영하여 세입과 세출을 일치시켜야 함. 2027년 1월 신규 개소에 따른 현행 사업 규모를 기준으로 향후 3년간 물가상승 및 인건비 인상 요인 등을 감안하여 2.5%의 증가율을 적용하는 것으로 가정되었으며, 추계기간 5년간 구비 5,109백만원이 필요한 것으로 산출됨

○ 육아종합지원센터 운영에 따른 비용 증가가 향후 재정 운영에 부담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으나, 영유아 양육 친화적 환경 조성 및 보육 서비스의 공공성 강화를 위한 필수 시설인 점을 고려하여, 필수적인 구비 소요액으로 진행하도록 검토 의견 회신함

○ 본 내용은 비용추계에 대한 사전 협의 의견으로, 예산편성 요구에 대한 조정안은 아니며, 향후 실질적인 사업 예산 편성 시 사업 추진부서와 소통하고 세부적인 사항을 고려하여 검토하겠음

연도별 비용 추계표

(단위 : 천원)

구 분	1차년도 (2027년)	2차년도 (2028년)	3차년도 (2029년)	4차년도 (2030년)	5차년도 (2031년)	계
세 입	2,008,060	2,058,260	2,109,716	2,162,461	2,216,523	10,555,020
육아종합지원센터 운영지원(시비)	24,000	24,600	25,215	25,845	26,491	99,660
육아종합지원센터 운영지원(구비)	486,000	498,150	510,604	523,369	536,453	2,018,123
육아종합지원센터 가정양육(부모교육) 지원사업(시비)	18,750	19,219	19,699	20,192	20,697	77,860
육아종합지원센터 가정양육(부모교육) 지원사업(구비)	6,250	6,406	6,566	6,731	6,899	25,953
가정육아 활성화 지원센터 운영비 지원(시비)	9,500	9,738	9,981	10,230	10,486	39,449
가정육아 활성화 지원센터 운영비 지원(구비)	38,000	38,950	39,924	40,922	41,945	157,796
가정육아 활성화 프로그램 보급사업 운영비 지원(시비)	18,000	18,450	18,911	19,384	19,869	74,745
가정육아 활성화 프로그램 보급사업 운영비 지원(구비)	18,000	18,450	18,911	19,384	19,869	74,745
대체교사지원사업(국·시비)	813,420	833,755	854,599	875,964	897,863	3,560,724
대체교사지원사업 (구비)	271,140	277,918	284,866	291,988	299,288	1,186,908
도담도담 장난감월드 운영 지원(시비)	152,500	156,312	160,220	164,226	168,332	705,758
도담도담 장난감월드 운영 지원(구비)	152,500	156,312	160,220	164,226	168,332	705,758
세 출	2,008,060	2,058,260	2,109,716	2,162,461	2,216,523	10,555,020
육아종합지원센터 운영지원	510,000	522,750	535,819	549,214	562,944	2,680,727
육아종합지원센터 가정양육(부모교육) 지원사업	25,000	25,625	26,265	26,923	27,596	131,409
가정육아 활성화 지원센터 운영비 지원	47,500	48,688	49,905	51,152	52,431	249,676
가정육아 활성화 프로그램 보급사업 운영비 지원	36,000	36,900	37,822	38,768	39,737	189,227
대체교사 지원사업	1,084,560	1,111,673	1,139,465	1,167,952	1,197,151	5,700,801
도담도담 장난감월드 운영 지원	305,000	312,624	320,440	328,452	336,663	1,603,179

재원 조달			2,008,060	2,058,260	2,109,716	2,162,461	2,216,523	10,555,020
의존재원	소 계		1,036,170	1,062,074	1,088,625	1,115,841	1,143,737	5,446,447
	보조금	국비	542,280	555,837	569,733	583,976	598,575	2,850,401
		시비	493,890	506,237	518,892	531,865	545,162	2,596,046
	지방교부세		-	-	-	-	-	-
	조정교부금		-	-	-	-	-	-
자체수입	소 계		971,890	996,186	1,021,091	1,046,620	1,072,786	5,108,573
	구비		971,890	996,186	1,021,091	1,046,620	1,072,786	5,108,573
지 방 채			-	-	-	-	-	-
기 금			-	-	-	-	-	-
공기업 특별회계			-	-	-	-	-	-
기 타 (채무부담, 민자 등)			-	-	-	-	-	-

"검단·당하노인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

검 토 보 고 서

【 검단구청장 】
의안번호 484

Ⅰ. 제안 경위

○ 의 안 명: 검단·당하노인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

○ 제 안 자: 검단구청장

○ 제출일자: 2026년 9월 3일

○ 회부일자: 2026년 9월 3일

Ⅱ. 제안 이유

○ 본 동의안은 검단노인복지관과 당하노인복지관의 기존 위탁 기간이 2026년 12월 31일 만료됨에 따라, 2027년부터 2031년까지 5년간 운영을 민간 위탁하고자 검단구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사항임

Ⅲ. 주요 내용

○ 위탁대상 시설 현황

구분	검단노인복지관	당하노인복지관
소재지	검단로 502번길 15-1	독정로 57, 3801동, 3802동
건물면적	2,674.23㎡	1,510.76㎡
기존 수탁기관	서해구시설관리공단	서해구시설관리공단

○ 위탁기간 : 2027.1.1.~2031.12.31.(5년)

○ 위탁사무

- 노인복지관 운영 및 기본사업
- 노인복지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 시설평가 및 모니터링

- 시설물 관리 및 유지보수
- 그밖에 위탁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무

○ 수탁자 선정 방법
- 갱신(다만, 수탁선정위원회 평가 결과 부적격 또는 위탁계약 협의 조건 미충족 시 공개 모집으로 선정 방식 변경)

○ 소요 예산
- 5년간 총 10,616백만원
  ・시비 : 5,034백만원
  ・구비 : 5,582백만원

Ⅳ. 검토 의견

1. 노인복지관의 법적 성격

○ 「노인복지법」 제36조 제1항 제1호는 노인복지관을 노인여가복지시설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으며, 교양・취미생활, 사회 참여활동, 건강 증진, 재가 복지 등 노인의 복지증진에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로 규정하고 있음.

따라서 검단・당하노인복지관은 법률상 노인여가복지시설에 해당하는 사회복지시설로서 공공성이 상당히 높은 시설임.

○ 또한 「노인복지법」 제47조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노인복지시설의 설치・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보조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는 노인여가복지시설을 그 보조 대상 시설에 포함하고 있음.

따라서 지방자치단체가 노인복지관을 설치・운영하고 필요한 경우 민간 등에 운영을 위탁하는 것은 법령상 가능한 체계임

○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 제5항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한 사회복지시설을 필요한 경우 사회복지법인이나 비영리법인에 위탁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또한 같은 법 시행규칙 제21조 제1항은 원칙적으로 공개 모집을 통해 수탁자를 선정하도록 하고 있음.

그리고 시행규칙 제21조 제3항은 수탁자의 재정적 능력, 공신력, 사업수행 능력, 지역 간 균형 분포 및 시설 평가 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선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선정위원회의 심의도 거쳐야 함.

특히 시행규칙 제21조의2는 위탁 계약 기간을 5년으로 규정하면서, 필요한 경우 선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계약기간을 갱신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인천광역시 검단구 노인여가복지시설 운영·관리 조례」 제4조는 구청장이 노인여가복지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또한 위탁 기간은 5년으로 하고 만료 시 갱신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갱신 시에는 수탁자의 사업 수행 능력을 평가하고 그 결과에 따라 갱신 여부를 결정하도록 하고 있음.

아울러 같은 조례 제7조는 선정위원회가 계약기간 만료에 따른 갱신 시 수탁자의 사업 수행 능력을 평가하고 심의·의결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따라서 기존 수탁자의 계약기간 만료 → 사업 수행 능력 평가 → 선정위원회 심의·의결 → 갱신 여부 결정이라는 절차를 거치는 것은 조례 체계상 타당함

○ 제출안에는 기존 수탁법인이 「서해구 시설관리공단」이고, 선정 방식을 갱신 조건으로 하고 있음.

그런데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 제5항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한 사회복지시설을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는 주체를 “사회복지법인이나 비영리법인”으로 규정하고 있음.

반면 지방공단은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설립하는 공공기관으로서, 현행 「지방공기업법」 제76조는 지방자치단체가 일정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지방공단을 설립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따라서 지방공단이라는 이유만으로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 제5항의 ‘비영리법인’에 당연히 포함된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움.

특히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1조 및 제21조의2가 사회복지시설의 위탁에 관하여 별도의 수탁자 자격과 선정절차를 규정하고 있으므로, 단순히 검단구 민간 위탁 조례에서 수탁기관의 범위를 넓게 규정하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상위법령의 수탁자 요건을 배제할 수는 없음.

따라서 “서해구시설관리공단이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 제5항에서 정한 ‘비영리법인’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법적 근거가 무엇인지 해당 부서의 확인이 필요해 보임

다만, 국심2006중2035(2006.10.12.)에서 “지방공기업법에서 주주권 행사나 손익금 처리 규정 등의 준용을 배제하고 있고, 잉여금 전부를 출자자인 안양시에 반납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할 때, 청구 법인을 법인세법 제1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한 비영리법인에 해당하는 것으로 봄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재정경제부 예규 법인세제과-252, 2006.3.30. 같은 뜻)” 라고 판시하고 있음

○ 비용추계서에는 「노인복지법」 제4조(비용의 보조)라고 기재하고 있으나 「노인복지법」 제4조는 보건복지증진의 책임에 관한 규정이고, 노인복지시설의 비용 보조에 관한 규정은 제47조(비용의 보조)임. 현행 법률에서도 제47조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노인복지시설 설치·운영 비용 보조 근거를 규정하고 있음

○ 본 동의안은 검단노인복지관 및 당하노인복지관의 기존 위탁 기간 만료에 따라 안정적인 노인복지서비스 제공을 위해 향후 5년간 운영을 위탁하고자 하는 것으로, 노인복지관은 「노인복지법」상 노인여가복지시설에 해당하고 지방자치단체가 그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으므로 사업의 법적·행정적 필요성은 인정됨.

또한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1조·제21조의2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한 사회복지시설의 위탁운영 및 5년의 위탁기간을 정하는 것은 법령상 가능한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검토” 하였음

○ 다만, 본 동의안은 기존 수탁기관이 ‘시설관리공단’이라는 점에서 일반적인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에 대한 민간 위탁과 구별하여 검

토할 필요가 있어, 시설관리공단이 동 규정상 수탁자 자격을 갖추는지에 대한 법적 근거와 관계기관의 해석을 내부적으로 재확인하여 향후 법적 시비를 차단하는 것이 바람직함

3. 참고사항(관계법령)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사회복지시설의 설치)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1조(시설의 위탁기준 및 방법)

◯「인천광역시 검단구 노인여가복지시설 운영·관리 조례」
제4조(운영), 제5조(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
제7조(선정위원회의 기능)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사회복지시설의 설치)

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사회복지시설(이하 “시설”이라 한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가 시설을 설치·운영하려는 경우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시설의 설치·운영 신고를 할 수 없다.
1. 제40조에 따라 폐쇄명령을 받고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2. 제19조 제1항 제1호 및 제1호의2부터 제1호의8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개인 또는 그 개인이 임원인 법인
③ 시장·군수·구청장은 제2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경우 그 내용을 검토하여 이 법에 적합하면 신고를 수리하여야 한다
④ 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재무·회계에 관한 기준에 따라 시설을 투명하게 운영하여야 한다.
⑤ 제1항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한 시설은 필요한 경우 사회복지법인이나 비영리법인에 위탁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다.
⑥ 제5항에 따른 위탁운영의 기준·기간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1조(시설의 위탁기준 및 방법)

① 법 제34조 제5항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한 시설을 위탁하여 운영하려는 경우에는 공개모집에 따라 수탁하는 법인(이하 “수탁자”라 한다)을 선정해야 한다. 다만,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사회복지사업을 할 목적으로 설립한 비영리법인에 위탁하여 운영하려는 경우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경우에는 공개모집을 하지 않을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시설의 수탁자 선정을 위하여 해당 시설을 설치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이하 “위탁기관”이라 한다)에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이하 “선정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③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라 수탁자를 선정하려는 경우에는 수탁자의 재정적 능력, 공신력, 사업수행능력, 지역간 균형분포 및 제27조의2에 따른 평가결과(평가를 한 경우에만 해당한다)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하며, 제2항에 따른 선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④ 선정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위탁기관의 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며,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위탁기관의 장이 지명한다.
1. 사회복지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2. 사회복지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3. 공익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4. 그 밖에 법률전문가 등 선정위원회 참여가 필요하다고 위탁기관의 장이 인정하는 사람

⑤선정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제4항 및 제5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선정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탁기관의 장이 정한다

인천광역시 검단구 노인여가복지시설 운영·관리조례 제4조(운영), 제5조(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 제7조(선정위원회의 기능)

제4조(운영)
① 노인여가복지시설은 인천광역시 검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운영한다. 다만, 노인여가복지시설의 효율적인 운영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구청장은 노인여가복지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에 위탁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위탁하여 운영하려는 경우에는 구청장과 위탁운영자(이하 "수탁자"라 한다)가 필요한 사항을 위탁계약으로 체결하여야 하며, 위탁계약기간은 5년으로 하되, 만료 시 그 기간을 갱신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따라 위탁 운영을 갱신할 경우 갱신할 때마다 수탁자의 사업수행능력을 평가하고 평가 결과에 따라 그 갱신 여부를 결정한다.
④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위탁자는 수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계약 체결 내용과 달리 운영하는 경우
2. 위탁받은 사회복지법인이나 비영리법인의 설립허가가 취소된 경우
⑤ 제1항에 따라 위탁하여 운영하려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시설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보조할 수 있으며, 위탁운영에 필요한 재산은 무상으로 사용하게 할 수 있다.
제5조(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 설치)
제3조제2항에 따라 구청장은 시설의 수탁자 선정을 위하여 인천광역시 검단구 수탁자 선정심의위원회(이하 "선정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7조(선정위원회의 기능)
선정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노인여가복지시설을 위탁하여 운영하고자 하는 경우 공개모집에 의하여 수탁자를 선정
2. 계약기간이 만료되어 계약기간을 갱신하고자 하는 경우 수탁자 사업수행능력 평가 및 심의·의결

비 용 추 계 서(제3조제1항 관련)

1. 비용발생 요인 및 관련 조문

○ 비용발생 요인: 노인여가문화시설(노인복지관) 운영 지원

○ 관련조문

-「노인복지법」제4조(보건복지증진의 책임)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노인의 보건 및 복지증진의 책임이 있으며, 이를 위한 시책을 강구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책을 강구함에 있어 제2조에 규정된 기본이념이 구현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노인의 일상생활에 관련되는 사업을 경영하는 자는 그 사업을 경영함에 있어 노인의 보건복지가 증진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노인복지법」제4조(비용의 보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노인복지시설의 설치·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보조할 수 있다.

2. 비용추계 결과

가. 추계의 전제

○ 비용산정의 기준연도는 2027년도로 하였으며, 추계 기간은 위탁 기간인 5년으로 함.

○ 인건비, 임금보전비는 물가상승률 및 임금인상률을 고려하여 연 3%의 증가율을 적용하여 산정함.

○ 종사자 처우개선사업비, 경로식당 무료급식 사업 등은 현행 사업 규모를 유지하는 것으로 가정하여 2027년도 기준 금액을 추계 기간 동안 동일하게 적용함.

나. 추계 결과

○ 본 의안 시행에 따른 총 소요비용은 추계 기간 5년간 10,616백만원으로 산정되며.

재원구성은 시비 5,034백만원, 구비 5,582백만원임.

다. 재원조달 방안

○ 운영비, 인건비, 경로식당 무료급식사업 : 시비 50%, 구비 50%

○ 노인복지관 운송지원, 경로식당 급식조리인력 : 전액 구비

○ 종사자 처우개선비(복지점수, 건강검진비, 급식비, 관리자 수당): 시비 100%

3. 연도별 비용 추계표 : 붙임

4. 부대의견 : 없음

작성자 : 복지국 노인장애인과장 안혜숙

연도별 비용 추계표

(단위 : 천원)

구 분			1차년도 (2027년)	2차년도 (2028년)	3차년도 (2029년)	4차년도 (2030년)	5차년도 (2031년)	계
세 입			**2,019,719**	**2,069,998**	**2,121,786**	**2,175,126**	**2,230,067**	**10,616,696**
노인복지관 운영지원			1,529,000	1,574,870	1,622,116	1,670,780	1,720,904	8,117,670
노인복지관 운송지원사업			57,900	59,637	61,426	63,269	65,167	307,399
경로식당 급식조리인력 지원			75,189	77,445	79,768	82,161	84,626	399,189
경로식당 무료급식 사업			312,000	312,000	312,000	312,000	312,000	1,560,000
행복한 공동밥상 사업			6,250	6,438	6,632	6,830	7,034	33,184
민간시설 활용 여가문화보급사업			6,000	6,180	6,366	6,556	6,752	31,854
노인여가복지시설 종사자 급식비 및 관리자수당			24,000	24,000	24,000	24,000	24,000	120,000
노인여가복지시설 하위직 종사자 임금인상			1,630	1,678	1,728	1,780	1,834	8,650
노인여가복지시설 종사자 복지점수			5,950	5,950	5,950	5,950	5,950	29,750
노인여가복지시설 종사자 건강검진비			1,800	1,800	1,800	1,800	1,800	9,000
세 출			**2,019,719**	**2,069,998**	**2,121,786**	**2,175,126**	**2,230,067**	**10,616,696**
노인복지관 운영지원			1,529,000	1,574,870	1,622,116	1,670,780	1,720,904	8,117,670
노인복지관 운송지원사업			57,900	59,637	61,426	63,269	65,167	307,399
경로식당 급식조리인력 지원			75,189	77,445	79,768	82,161	84,626	399,189
경로식당 무료급식 사업			312,000	312,000	312,000	312,000	312,000	1,560,000
행복한 공동밥상 사업			6,250	6,438	6,632	6,830	7,034	33,184
민간시설 활용 여가문화보급사업			6,000	6,180	6,366	6,556	6,752	31,854
노인여가복지시설 종사자 급식비 및 관리자수당			24,000	24,000	24,000	24,000	24,000	120,000
노인여가복지시설 하위직 종사자 임금인상			1,630	1,678	1,728	1,780	1,834	8,650
노인여가복지시설 종사자 복지점수			5,950	5,950	5,950	5,950	5,950	29,750
노인여가복지시설 종사자 건강검진비			1,800	1,800	1,800	1,800	1,800	9,000
재원 조달			**2,019,719**	**2,069,998**	**2,121,786**	**2,175,126**	**2,230,067**	**10,616,696**
의존재원	소 계		**959,190**	**982,333**	**1,006,171**	**1,030,723**	**1,056,012**	**5,034,429**
	보조금	국비						
		시비	959,190	982,333	1,006,171	1,030,723	1,056,012	5,034,429
	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							
자체수입	소 계		**1,060,529**	**1,087,665**	**1,115,615**	**1,144,403**	**1,174,055**	**5,582,267**
	구비		1,060,529	1,087,665	1,115,615	1,144,403	1,174,055	5,582,267
지 방 채			-	-	-	-	-	-
기 금			-	-	-	-	-	-
공기업 특별회계			-	-	-	-	-	-
기 타 (채무부담, 민자등)			-	-	-	-	-	-

"구립서로이음장애인주간보호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검 토 보 고 서

【 검단구청장 】
의안번호 479

Ⅰ. 제안 경위

○ 의 안 명: 구립서로이음장애인주간보호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 제 안 자: 검단구청장

○ 제출일자: 2026년 9월 3일

○ 회부일자: 2026년 9월 3일

Ⅱ. 제안 이유

○ 구립서로이음장애인주간호보센터의 위탁 계약기간 만기 도래에 따라,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가진 운영 기관에 위탁을 추진하여,

○ 독립적 일상생활 영위가 어려운 성인발달장애인을 낮 시간 동안 보호하여 가족구성원의 돌봄 부담을 경감하고,

○ 장애인 개인 맞춤별 사회·교육 재활 프로그램 제공하여 사회 적응력과인지 및 신체기능이 향상되도록 지원하고자 함.

Ⅲ. 주요 내용

○ 위탁대상 시설 현황

구분	구립서로이음장애인주간보호센터
소재지	완정로 153, 4층
면적	229.32㎡
정원	15명
종사자	5명
기존수탁법인	(사)전국장애인부모연대

○ 위탁기간 : 2026.11.10.~2031.11.9.(5년)

○ 위탁사무

- 구립서로이음장애인주간보호센터 운영 및 관리
- 장애인의 일상생활 및 지역사회 적응 활동 지원
- 사회·교육 재활 프로그램 운영
- 장애인 및 가족 지원서비스 제공
- 시설물 관리 및 유지·보수
- 그밖에 센터 운영에 필요한 사항

○ 수탁자 선정 방법

- 공개 모집

○ 소요 예산

- 5년간 총 1,877백만원
  - ·시비 : 981백만원
  - ·구비 : 895백만원

Ⅳ. 검토 의견

1. 민간 위탁의 법적 근거

○ 「지방자치법」 제117조 제3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조사·검사·검정·관리 업무 등 주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않는 사무를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 또한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 제1항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사회복지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같은 조 제4항에서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한 시설을 필요한 경우 사회복지법인이나 비영리법인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 따라서 구에서 설치·운영하는 장애인주간보호시설을 전문성을 갖춘 법인 등에 위탁하여 운영하는 것은 관계 법령상 가능한 것으로 판단됨.

2. 장애인주간보호시설의 법적 성격

○ 「장애인복지법」 제58조는 장애인복지시설의 종류를 규정하고 있으며

장애인 지역사회재활시설에는 장애인주간보호시설이 포함됨.

또한 「장애인복지법」 제59조 제1항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장애인 복지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별표 4에서는 장애인 주간보호시설을 ‘장애인을 주간에 일시 보호하여 장애인에게 필요한 재활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로 규정하고 있음.

○ 따라서 본 시설은 단순한 시설관리 성격의 시설이 아니라 장애인의 일상생활 지원과 재활서비스 제공을 목적으로 하는 장애인 지역사회재활시설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음.

3. 공개 모집에 따른 수탁기관 선정의 적정성

○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1조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한 사회복지시설을 위탁하여 운영하려는 경우 공개 모집에 따라 수탁자를 선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음.

또한 수탁자 선정 시 재정적 능력, 공신력, 사업 수행 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도록 하고 있으며, 수탁자 선정을 위한 선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하고 있음.

따라서 본 동의안에서 수탁기관 선정 방법을 공개 모집으로 정한 것은 관계 법령의 취지에 부합함.

4. 종합 검토의견

○ 본 동의안은 기존 구립서로이음장애인주간보호센터의 민간위탁기간이 2026년 11월 9일 만료됨에 따라, 장애인복지 분야의 전문성과 운영 경험을 갖춘 민간기관을 공개 모집하여 향후 5년간 시설 운영을 위탁하기 위한 것으로, 「지방자치법」 제117조 제3항에 따른 민간 위탁의 법적 근거가 있고,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 제5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한 사회복지시설을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에 위탁할 수 있으며, 「장애인복지법」상 장애인주간보호시설은 장애인의 주간 보호 및 재활서비스 제공을 목적으로 하는 장애인 지역사회재활시설이라는 점에서 민간 위탁의 필요성과 법적 근거는 인정되는 것으로 판단됨.

또한 위탁 기간을 5년으로 설정하고 공개모집을 통해 수탁기관을 선정하고자 하는 것은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의 취지에 부합하는 것으로 보이며, 검단구 민간 위탁 조례에서 정한 민간 위탁 적정성 검토 기준에 비추어 보더라도 민간의 전문성을 활용할 필요성이 높은 사무로서 민간 위탁의 적정성은 인정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

○ 따라서 본 동의안은 상위법에 위배됨이 없어 “원안검토”함.

관계법령 발췌

□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1조 (시설의 위탁기준 및 방법)

①법 제34조제5항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한 시설을 위탁하여 운영하려는 경우에는 공개모집에 따라 수탁하는 법인(이하 “수탁자”라 한다)을 선정해야 한다. 다만,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사회복지사업을 할 목적으로 설립한 비영리법인에 위탁하여 운영하려는 경우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경우에는 공개모집을 하지 않을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른 시설의 수탁자 선정을 위하여 해당 시설을 설치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이하 “위탁기관”이라 한다)에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이하 “선정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③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라 수탁자를 선정하려는 경우에는 수탁자의 재정적 능력, 공신력, 사업수행능력, 지역간 균형분포 및 제27조의2에 따른 평가결과(평가를 한 경우에만 해당한다)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하며, 제2항에 따른 선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④선정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위탁기관의 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며,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위탁기관의 장이 지명한다.

1. 사회복지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2. 사회복지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3. 공익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4. 그 밖에 법률전문가 등 선정위원회 참여가 필요하다고 위탁기관의 장이 인정하는 사람

⑤선정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제4항 및 제5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선정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탁기관의 장이 정한다.

□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1조2 (시설의 위탁)

①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법 제34조제5항에 따라 시설을 위탁하여 운영하고자 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1. 수탁자의 명칭, 주소 및 대표자의 이름
2. 위탁계약기간
3. 위탁대상시설 및 업무내용
4. 수탁자의 의무 및 준수 사항
5. 시설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5의2. 시설종사자의 고용승계에 관한 사항
6. 계약의 해지에 관한 사항
7. 기타 시설의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②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탁계약기간은 5년으로 한다. 다만, 위탁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제21조제2항에 따른 선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계약기간을 갱신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위탁자는 수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제1항에 따른 계약 체결 내용과 달리 운영하는 경우
2. 위탁받은 사회복지법인이나 비영리법인의 설립허가가 취소된 경우

□ 인천광역시 검단구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4조 (민간위탁 대상 사무의 기준 등)

① 구청장은 「지방자치법」 제117조제3항에 따라 그 소관 사무 중 조사·검사·검정·관리업무 등 주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않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민간위탁할 수 있다.
1. 단순 사실행위인 행정작용
2. 공익성보다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
3. 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이 필요한 사무
4. 그 밖에 국민 생활과 직결된 단순 행정사무

② 구청장은 제1항 각 호의 사무에 대해 민간위탁을 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민간위탁의 적정성을 미리 검토하여야 한다.
1. 민간위탁이 아닌 다른 방식으로 사무를 수행할 수 있는 가능성
2. 서비스 공급의 공공성 및 안정성
3. 민간위탁의 경제적 효율성
4. 민간의 전문지식 및 기술 활용 가능성
5. 민간위탁하려는 사무의 성과 측정의 용이성
6. 민간위탁하려는 사무의 관리 및 운영의 투명성
7. 민간위탁하려는 사무와 관련된 민간 서비스의 공급 현황
8. 그 밖에 민간위탁의 적정성 검토를 위해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비 용 추 계 서(제3조제1항 관련)

1. 비용발생 요인 및 관련 조문

○ 비용발생 요인: 장애인복지시설(장애인주간보호센터)운영 지원

○ 관련조문

-「장애인복지법」제81조(비용의 보조)

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장애인복지시설의 설치·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사회복지사업법」제42조(보조금 등)

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사회복지사업을 하는 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에게 운영비 등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2. 비용추계 결과

가. 추계의 전제

○ 비용산정의 기준연도는 2027년도로 하였으며, 추계 기간은 위탁 기간인 5년으로 함.

○ 인건비, 임금보전비는 물가상승률 및 임금인상률을 고려하여 연 3%의 증가율을 적용하여 산정함.

○ 종사자 처우개선사업비 등은 현행 사업 규모를 유지하는 것으로 가정하여 2027년도 기준 금액을 추계 기간 동안 동일하게 적용함.

나. 추계 결과

○ 본 의안 시행에 따른 총 소요비용은 추계 기간 5년간 1,802백만원으로 산정되며.

재원구성은 시비 906백만원, 구비 895백만원임.

다. 재원조달 방안

○ 운영비, 인건비 : 시비 50%, 구비 50%

○ 시설 관리비 : 전액 구비

○ 종사자 처우개선비(복지점수, 건강검진비, 급식비, 관리자 수당): 시비 100%

3. 연도별 비용 추계표 : 붙임

4. 부대의견 : 없음

작성자 : 복지국 노인장애인과장 안혜숙

연도별 비용 추계표

(단위 : 천원)

구 분			1차년도 (2027년)	2차년도 (2028년)	3차년도 (2029년)	4차년도 (2030년)	5차년도 (2031년)	계
세 입			341,183	350,565	360,224	370,018	380,106	1,802,096
장애인주간보호 시설운영(지비)			162,267	166,883	171,637	176,534	181,578	858,899
지역사회재활시설 종사자지원(지비)			9,450	9,450	9,450	9,450	9,450	47,250
장애인주간보호 시설운영(구비)			169,466	174,232	179,137	184,034	189,078	895,947
세 출			341,183	350,565	360,224	370,018	380,106	1,802,096
장애인주간보호 시설 인건비			307,733	316,965	326,474	336,268	346,356	1,633,796
장애인주간보호 시설 운영비			16,800	16,800	16,800	16,800	16,800	84,000
장애인주간보호 시설운영(관리비)			7,200	7,350	7,500	7,500	7,500	37,050
지역사회재활시설 종사자 복지점수			1,650	1,650	1,650	1,650	1,650	8,250
지역사회재활시설 종사자 건강검진비			600	600	600	600	600	3,000
지역사회재활시설 종사자 급직비			6,000	6,000	6,000	6,000	6,000	30,000
지역사회재활시설 종사자 관리자수당			1,200	1,200	1,200	1,200	1,200	6,000
재원 조달			341,183	350,565	360,224	370,018	380,106	1,802,096
의존 재원	소 계		171,717	176,333	181,087	185,984	191,028	906,149
	보조금	국비	-	-	-	-	-	-
		시비	171,717	176,333	181,087	185,984	191,028	906,149
	지방교부세		-	-	-	-	-	-
	조정교부금		-	-	-	-	-	-
자체 수입	소 계		169,466	174,232	179,137	184,034	189,078	895,947
	구비		169,466	174,232	179,137	184,034	189,078	895,947
지 방 채			-	-	-	-	-	-
기 금			-	-	-	-	-	-
공기업 특별회계			-	-	-	-	-	-
기 타 (채무부담, 민자등)			-	-	-	-	-	-

“인천광역시 검단구 장애인 표준사업장 생산품 우선구매 촉진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 (나선희,김남원,박병빈,이현주,이향미,한규창)의원 】

의안번호 485

Ⅰ. 제안 경위

○ 의 안 명: 인천광역시 검단구 장애인 표준사업장 생산품 우선구매 촉진 조례안

○ 제 안 자: (나선희,김남원,박병빈,이현주,이향미,한규창)의원

○ 제출일자: 2026년 9월 3일

○ 회부일자: 2026년 9월 3일

Ⅱ. 제안 이유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서는 장애인 표준사업장 생산품의 공공기관 우선구매 제도를 규정하고 있으며, 공공기관의 장에게 장애인 표준사업장 생산품의 우선구매 의무 및 구매계획·실적 제출 등의 의무를 부여하고 있음.

○ 이에 검단구에 소재하는 장애인 표준사업장 생산품의 구매를 촉진하기 위한 사항을 조례로 규정함으로써 장애인 표준사업장의 판로 확대와 장애인 고용 및 소득 향상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임.

Ⅲ. 주요 내용

○ 장애인 표준사업장 및 장애인 표준사업장 생산품의 정의를 규정함(안 제2조)

○ 구청장의 장애인 표준사업장 생산품 우선구매 촉진 책무를 규정함(안 제3조)

○ 우선구매 대상 기관 및 구매목표비율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4조 및 제5조)

○ 구매 실적의 점검·분석 및 구매 목표 미달 기관에 대한 구매 확대 권고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6조)

○ 공공기관 등에 대한 협조 요청 및 홍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7조)

○ 구매 실적 및 우수사례의 공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8조)

○ 관계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등과의 협력관계 구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9조)

○ 우선구매 촉진에 기여한 기관·단체 및 공무원 등에 대한 포상 근거를 규정함(안 제10조)

Ⅳ. 검토 의견

1. 관계법령 검토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조 제8호는 장애인 고용인원·고용비율 및 시설·임금 등에 관하여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사업장을 ‘장애인 표준사업장’으로 정의하고 있음.
- 또한 같은 법 제22조의4 제1항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의 공공기관의 장에게 물품·용역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장애인 표준사업장에서 생산한 물품과 제공하는 용역을 우선 구매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음.
- 따라서 검단구가 장애인 표준사업장 생산품의 우선구매를 촉진하는 조례를 제정하는 것은 상위법령의 취지와 부합한다고 볼 수 있음.
- 특히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 지원에 관한 법률」상 공공기관에는 지방자치단체가 명시적으로 포함되어 있으므로 검단구 역시 장애인 표준사업장 생산품 우선구매 제도의 적용 대상이 됨.

○ 구매계획 및 구매실적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2조의4 제2항은 공공기관의 장에게 장애인 표준사업장 생산품의 구매계획과 전년도 구매 실적을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하고 있음.
-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의5에 따르면 공공기관의 장은 매년 2월 말일까지 해당 연도의 구매계획과 전년도 구매 실적을 제출하여야 함.
- 또한 고용노동부장관은 제출된 구매계획과 실적을 종합하여 매년 4월 30일까지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도록 하고 있음.
- 따라서 조례안 제6조에서 구매 실적을 매년 점검·분석하도록 한 것은 상위법령에 따른 구매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보완적 규정으로 볼 수 있음.

○ 구매목표비율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2조의4 제2항은 구매계획에 공공기관별 총구매액의 100분의 1 범위에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비율 이상의 장애인 표준사업장 생산품 구매 목표를 제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현재 고용노동부의 관련 제도 안내에 따르면 2026년 장애인 표준사업장 생산품 구매 목표 비율은 총구매액의 0.8% 이상으로 운영되고 있음.
- 따라서 조례안 제5조에서 상위법령 및 관계 고시에 따른 구매 목표 비율을 적용하도록 한 것은 타당함.
- 다만, 구매 목표 비율은 향후 고용노동부장관의 고시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므로 조례에 수치를 직접 규정하지 않고 현행 안과 같이 관계 법령에 따르도록 하는 것이 적절함.

2. 조문별 검토

○ 안 제3조(구청장의 책무)

- 구청장은 장애인 표준사업장 생산품 우선구매를 촉진하기 위한 지원 및 시책을 추진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이는 상위법에서 정하고 있는 우선 구매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정책적 책무를 구체화한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음.

- 다만 제1항의 “필요한 지원”은 실제 예산 지원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으므로, 향후 지원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별도의 예산편성 및 지원 근거가 필요할 수 있음.

○ 안 제4조(우선구매 대상 기관)

- 제1항 “구청장은 장애인 표준사업장 생산품을 우선 구매하여야 한다.”라고 정하고 있는데 상위법인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2조의4 제1항에서 이미 공공기관의 장에게 장애인 표준사업장 생산품의 우선구매 의무를 부여하고 있으므로 그 취지를 조례에서 확인하는 것은 가능함.
- 다만, 이 조례안의 목적은 “검단구에 소재하는 장애인 표준사업장 생산품”의 우선구매를 촉진하는 것인데, 제4조 제1항은 그 대상을 특정하지 않고 단순히 “장애인 표준사업장 생산품”이라고 규정하고 있음.
- 조례안의 목적대로 검단구 소재 사업장의 생산품만 의무적으로 구매하도록 하려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과의 관계를 면밀히 검토해야 함.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은 지방자치단체의 계약을 원칙적으로 일반입찰에 부치도록 하면서 예외적으로 계약의 목적·성질·규모 및 지역 특수성 등을 고려하여 제한입찰이나 수의계약을 허용하고 있음.
- 또한 같은 법 제9조 제5항은 다른 법률에 따른 우선구매 대상이 경합하는 경우 계약의 목적이나 규모,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수준 등을 고려하여 계약 상대자를 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따라서 “검단구 소재”라는 지역적 요건을 근거로 다른 지역의 장애인 표준사업장 생산품보다 검단구 소재 생산품을 무조건 우선하여 구매하도록 하는 것은 지방계약법상 계약 절차 및 경쟁 원칙과 충돌할 소지가 있어 실무에서 충분한 검토가 필요함.

- 제4조 제2항에서 지방공기업 및 출자·출연기관에 우선구매를 권고할 수 있도록 한 것은 강제 규정이 아니라 권고사항이므로 특별한 문제는 없음.

○ 안 제8조(성과 공표)

- 매년 구매 실적 및 우수사례를 구 홈페이지 등에 공표할 수 있도록 한 것으로, 우선구매 실적의 투명성을 높이고 기관 간 선의의 경쟁을 유도한다는 점에서 타당함.
- 다만, 공표하는 과정에서 특정 업체의 영업상 정보 등이 포함되지 않도록 개인정보 및 영업비밀 등 관련 법령을 준수할 필요가 있음.
- 따라서 현행과 같이 “공표할 수 있다”는 임의규정을 두는 것이 적절함

○ 안 제8조(성과 공표)

- 조례안 조문은 “구청장은 … 기관·단체 또는 담당 부서·공무원에게 「인천광역시 검단구 포상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 현재 시행 중인 「인천광역시 검단구 포상 조례」는 포상 대상을 공무원뿐만 아니라 구민 및 기관·단체까지 포함하고 있고, 표창장 및 감사장 등의 포상 방법을 규정하고 있음.
- 다만, 제시한 관계 법령 발췌 자료에서는 「인천광역시 검단구 포상조례」 제10조인 ‘모범공무원 포상’만 인용하고 있음
- 현행 포상 조례상 기관·단체 등에 대한 포상은 제2조에서 포상 대상을 규정하고, 표창장은 제5조, 감사장은 제8조 등에서 규정하고 있음.
- 따라서 붙임 관계 법령 자료에서 제10조만 발췌하였는데 향후 실무에서는 다른 조항까지 살펴서 폭넓게 포상하는 방안을 모색하여야 함.

2. 종합 검토의견

○ 본 조례안은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장애인 표준사업장 생산품 우선 구매제도의 취지를 검단구 차원에서 구체화하여 장애인 표준사업장의 판로를 확대하고 장애인 고용 및 소득 향상에 기여하려는 것으로, 입법 취지와 필요성이 인정됨.

○ 특히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은 지방자치단체를 포함한 공공

기관의 장에게 장애인 표준사업장 생산품의 우선구매 의무를 부여하고 있고, 구매계획 및 전년도 구매 실적을 매년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구매 실적 점검·분석 및 홍보 등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관리 체계를 조례로 마련하는 것은 상위법령의 취지에 부합함.

○ 따라서 본 조례안은 상위법에 위배됨이 없어 “원안검토”하였음.

○ 다만, 검단구 소재 장애인 표준사업장 생산품을 다른 지역의 장애인 표준 사업장 생산품보다 무조건 우선 구매하도록 해석될 수 있는 규정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과의 관계에서 논란이 발생할 수 있어 실무에서는 충분한 법률 검토 후 시행해야 할 것으로 판단됨.

붙임1 관계법령 검토와 발췌 사항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8. “장애인 표준사업장”이란 장애인 고용 인원·고용비율 및 시설·임금에 관하여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사업장(「장애인복지법」 제58조제1항제3호에 따른 장애인 직업재활시설은 제외한다)을 말한다.

제22조의4(장애인 표준사업장 생산품의 우선구매 등) ①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공공기관(이하 이 조에서 “공공기관”이라 한다)의 장은 물품·용역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장애인 표준사업장에서 생산한 물품과 제공하는 용역(이하 “장애인 표준사업장 생산품”이라 한다)을 우선구매하여야 한다.

② 공공기관의 장은 장애인 표준사업장 생산품의 구매계획과 전년도 구매실적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구매계획에는 공공기관별 총구매액(물품과 용역에 대한 총구매액을 말하되, 공사비용은 제외한다)의 100분의 1의 범위에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비율 이상에 해당하는 장애인 표준사업장 생산품의 구매목표를 제시하여야 한다.

③ 공공기관의 장은 장애인 표준사업장 생산품을 수의계약으로 구매할 수 있다. 이 경우 수의계약의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하여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 관계 법령에 따른다.

④ 공공기관의 장은 소속 기관 등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장애인 표준사업장 생산품의 구매실적을 포함하여야 한다.

⑤ 고용노동부장관은 구매계획의 이행 점검 등을 위하여 공공기관의 장에게 장애인 표준사업장 생산품의 구매실적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공공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20. 5.

26.>

⑥ 고용노동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공공기관의 장이 제출한 전년도 구매실적과 해당 연도의 구매계획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용노동부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 <신설 2016. 12. 27.>

□인천광역시 검단구 포상조례

제10조(모범공무원 포상) 모범공무원 포상대상자는 구 및 구 산하기관에 근무하는 공무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선발한다.

1.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 모범이 된 사람
2. 구민의 소득증대, 지역사회개발 및 새마을운동에 헌신한 사람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제3조제3항 관련)

1. 비용발생요인

○ 비용발생 요인 : 포상

○ 관련조문

- 「인천광역시 검단구 장애인 표준사업장 생산품 우선구매 촉진 조례」제10조(포상) 구청장은 장애인 표준사업장 생산품의 구매촉진에 기여한 담당 부서· 공무원에게「인천광역시 검단구 포상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2. 미첨부 근거 규정

「인천광역시 검단구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제3조 제1항 제1호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5천만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1억5천만원 미만인 경우

3. 미첨부 사유

장애인 표준사업장 생산품의 구매촉진에 기여한 담당 부서·공무원에게 주는 포상금 예산은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5천만원 미만임

작성자 : **복지국 노인장애인과장 안혜숙**

“인천광역시 검단구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생성장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 검단구청장 】
의안번호 480

Ⅰ. 제안 경위

○ 의 안 명: 인천광역시 검단구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제 안 자: 검단구청장

○ 제출일자: 2026년 9월 3일

○ 회부일자: 2026년 9월 3일

Ⅱ. 제안 이유

○ 본 개정안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개정에 따른 위원회 명칭 변경 사항을 반영하고, 국가인권위원회의 기후 위기 취약계층 보호 제도개선 권고를 이행하기 위하여 실태조사 및 보호·지원 근거를 명확히 함으로써 조례의 체계성과 실효성을 제고하고자 함

Ⅲ. 주요 내용

○ 기후 위기 취약계층 보호 및 지원 사항을 기본계획 등에 반영(안 제8조 제3항 신설)

○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를 「기후위기대응위원회」로 명칭 변경(안 제10조)

○ 다양한 의견 수렴을 위한 위촉직 위원 자격 신설(안 제11조 제3항 제2호)

○ 위원회 수당 지급 근거 정비(안 제17조)

○ 기후 위기 취약계층 실태조사 근거 신설(안 제23조의2 신설)

○ 기후 위기 취약계층 보호 및 지원사업 추진 근거 신설(안 제23조의3 신설)

Ⅳ. 검토 의견

1. 관계법령 검토

○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 현행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은 지방자치단체의 탄소중립 및 기후위기 적응에 관한 책무를 규정하고 있음.
- 특히 법 제22조는 지방자치단체별로 지방기후위기대응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하고, 위원회의 구성·운영·기능 등에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하도록 하면서, 위원을 위촉할 때는 아동, 청년, 여성, 장애인, 노동자, 농어민, 중, 소상공인, 시민사회단체 등 다양한 사회계층의 대표성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 또한 법 제40조는 시장·군수·구청장이 관할구역의 지방기후위기적응대책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아울러 법 제4조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각종 계획 수립 및 사업 집행 과정에서 기후위기의 영향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도록 하고 있음

○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제2조 및 제3조

- 2026년 4월 7일 개정된 법률에는 “기후위기 취약계층”의 정의가 신설되었음.
- 개정 법률은 기후위기 취약계층을 노인, 아동, 저소득층, 야외노동자, 농업·어업 종사자, 취약 시설·지역 거주자 등 생물학적·사회적·경제적·지리적 여건으로 기후위기 취약성이 상대적으로 높고 기후 회복력이 낮은 집단으로 규정하고 있고 또한 기후위기 취약계층에 대한 기후위기 파급효과 및 영향을 최소화하도록 하는 기본원칙도 신설되었음.

○ 국가인권위원회의 제도개선 권고

- 국가인권위원회는 기후위기로 인하여 생명권·건강권·주거권 등 기본권이 특히 취약계층에게 더 심각하게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을 지적하고, 기후위기 취약계층의 정기적인 실태조사와 그 결과에 기반

한 적응 대책 수립 및 공개가 필요하다고 권고한 바 있음.

- 또한 2025년에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해서도 기후위기 취약계층 실태조사와 보호 대책 마련 등을 권고하였음.
- 따라서 이번 개정안은 이러한 국가인권위원회의 정책적 권고를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제도화하려는 것으로 그 취지는 타당한 것으로 판단함.

2. 조문별 검토

○ 안 제8조제3항 신설

- “구청장은 제2항의 조사 및 연구의뢰 시 기후 위기 취약계층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기본계획 및 적응대책에 반영할 수 있다.” 라고 규정하고 있음
- 기후 위기 취약계층에 대한 조사·연구 결과를 탄소중립 및 기후 위기 적응 정책에 반영하려는 취지는 타당함.
- 특히 국가인권위원회도 취약계층의 특수한 취약성 및 피해 정도를 파악하기 위한 실태조사와 그 결과를 바탕으로 한 적응대책 마련의 필요성을 제시하고 있음.
- 현재 문안은 앞부분에서 조사·연구 시 취약계층 관련 사항을 “포함하여야 하며” 라고 의무화하면서, 그 결과의 기본계획 및 적응대책 반영은 “반영할 수 있다” 라고 규정하고 있고, 뒤에서 신설하는 제23조의2 제3항에서는 실태조사 결과를 기본계획 및 적응대책에 “반영하여야 한다” 고 규정하고 있어 양 조항 사이에 의무 수준의 차이가 발생함
- 따라서 조례안 취지에서는 원칙적으로 타당하나, 안 제8조 제3항과 뒤에 신설하는 안 제23조의2 제3항 규정을 임의규정이나 강행규정으로 통일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됨

○ 안 제3장 및 제10조

-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 「기후위기대응위원회」이는 상위법 개정사항을 반영하는 것으로 타당함.
- 현행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제22조는 지방자치단체의 위원회를 “지방기후위기대응위원회” 라고 명칭하고 있음.

- 따라서 검단구 조례에서도 상위법의 명칭 변경을 반영하여 기존 위원회의 명칭을 변경하는 것은 적절함

○ 안 제11조제3항제2호다목 신설

-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 중 상위법과의 연계성이 가장 명확한 부분임.
- 상위법 제22조 제3항은 지방기후위기대응위원회 위원을 위촉할 때 아동, 청년, 여성, 장애인, 노동자, 농어민, 중소상공인, 시민사회단체 등 다양한 사회계층의 대표성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는데, 이번 개정조례안은 “아동, 청소년, 여성, 장애인, 노동자, 농어민, 중소상공인, 시민사회단체 등”이라고 규정하고 있어, 단순한 표현 차이로 보일 수 있으나, 상위법의 위원 구성 기준을 조례에서 구체화하는 조항이므로 상위법 문언과 일치시키는 것이 적절함.

○ 안 제23조의2 신설

- 제1항 “구청장은 ..... 파악하기 위하여 정기적으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정기적으로”라는 표현이 지나치게 추상적일 수 있어, 기후위기 취약계층 조사는 법정계획인 지방기후위기 적응 대책의 수립 주기와 연계하여 5년마다 실시하는 방식이 행정상 편리할 수 있으나, 폭염 · 한파 · 침수 등의 기후재난 특성을 고려하면 5년은 다소 긴 주기일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조사 주기는 시행 계획이나 행정계획으로 정하도록 하는 방식도 고려할 수 있음
- 제2항 “관계 기관 ·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 조항이 개인정보 또는 민감한 개인정보까지 제출하도록 강제하는 근거로 해석되어서는 안 됨.
- 특히 취약계층 조사 과정에서는 건강 상태, 장애, 소득, 주거 상태 등 개인정보가 포함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실무에서는 개인정보 보호 관련 법령을 준수하도록 하는 것이 필요함.
- 제3항 규정도 조사 결과에 개인 또는 가구를 식별할 수 있는 정보가 포함될 경우 개인정보 침해 가능성이 있으므로 실무에서 보완할 필요함.

3. 종합 검토의견

○ 본 개정 조례안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의 개정에 따른 지방기후위기대응위원회 명칭 변경 사항을 반영하고, 기후위기 취약계층에 대한 실태조사 및 보호·지원 근거를 마련하여 지역 차원의 기후위기 적응 정책을 강화하려는 것으로서 개정의 필요성과 목적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됨.

○ 특히 「탄소중립기본법」 제22조는 지방기후위기대응위원회 구성 시 아동·청년·여성·장애인·노동자·농어민·중, 소상공인·시민사회단체 등 다양한 사회계층의 대표성이 반영되도록 하고 있어, 개정안의 위원 구성 관련 규정은 상위법의 취지를 구체적으로 반영한 것으로 볼 수 있음.

○ 또한 국가인권위원회가 기후위기 취약계층의 정기적인 실태조사와 보호 대책 마련을 권고한 점을 고려할 때, 실태조사 및 보호·지원사업의 근거를 마련하는 것은 기후위기 대응의 인권적 측면과 지역 맞춤형 적응 정책을 강화한다는 점에서 정책적 타당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하여 “원안검토”함.

○ 다만, 문구 수정이나 추가적인 수정 사항은 충분한 논의 후 결정할 사안이라 판단함.